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 및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질적인 가치나 규범에 접하고 지나친 경쟁에 시달리고 있어 혼란과 갈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발생요인은 주로 환경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여가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가활동 및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필수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요소라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무조건 수련시설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변수들이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락카페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락카페가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일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가 현재의 공급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왜 생활권 수련시설들이 별로 붐비질 않는 것일까? 그리고 자연권 수련시설들이 수련생 유치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수련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면 청소년들이 락카페나 노래방, 전자오락실에 가질 않고 수련시설로 모여들 것인가? 현재 생활권 수련시설들의 이용현황은 어떤가? 청소년들이 많이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속셈학원이나 미술학원, 영어학원을 다니느라고, 아니

면 학교의 자율학습에 묶여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활권 수련시설 프로그램들이 어떤 면에서 학원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 많은 고1학생이 밤 10시에, 고3은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온다고 한다. 언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오락실은 항상 북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고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수요를 잘 살펴야 할 것이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건전한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 파악이 없이 수련시설을 만들게 되면 수련시설이 폐교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창출과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련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아파트 놀이터를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놀이터는 발 디딜 틈 없이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지만, 어떤 아파트의 놀이터는 항상 텅 비어 있다. 이런 지역사회의 필요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련시설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도 지역주민의 선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공공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수련시설이 특히 생활권 수련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설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이며, 그 지역에서 사설 학원이나 시설들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필요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지 못하며, 시설이 편중된 지역이더라도 같은 유형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체험이라는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조건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심어주고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수련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조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 방안을 찾아보고,

둘째, 청소년의 심신발달 및 건전한 정신의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의 장이 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국적인 고른 분포를 위하여 적절한 소요량을 산출하고,

셋째, 수련시설 소요량에 상응하는 수련시설의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네째, 시설유형별로 합리적인 전국균형모델을 모색하여 그 기대효과로서 전체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2. 연구의 수행방법

1) 연구의 방법

우선 연구 실무자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조정·결정하였다. 청소년 수련시설 필요수량, 확보방안, 배치방안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육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역적 균형모델 제시를 위한 접근방법은 크게

4 수련시설 필요수량 확보 및 지역별 균형모델

아래의 네부분으로 나뉘어진다.

① 기존의 수련시설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시설의 배치에 관한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배치기준 설정의 영향인자를 검토하는 것이다.

② 현재 청소년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시설의 소요량 및 신규로 확보되어야 할 시설의 신규확보량을 산출하여 전국적인 배치기준 설정시 기준이 되는 수련시설의 적정규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③ 앞에서 검토된 영향인자 및 시설소요량을 토대로 합리적인 지역적 균형모델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④ 이러한 수련시설을 실제로 지역에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입지선정의 기준과 시설확보방안 및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크게 수련시설과 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인구에 관한 것으로 대별된다. 연구내용은 수련시설의 배치여건등의 현황분석과 필요수요의 총량산출 및 입지와 균형모델 설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2) 연구 진행 과정

- ① 1996년 3월 연구 착수
- ② 1996년 4월 연구방향 조정을 위한 연구실무자 회의
- ③ 1996년 5~8월 관련문헌, 통계 등 기존자료 수집 분석
- ④ 1996년 9~10월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⑤ 1996년 11월 최종보고서 작성 및 원고교정
- ⑥ 1996년 12월 최종보고서 인쇄

3) 연구 내용

(1) 수련시설의 배치여건

수련시설의 배치여건은 수련시설의 주 이용자인 청소년의 특성과 유

형별·지역별 수련시설의 분포현황 및 수련시설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균형모델 설정시 영향을 주는 인자를 파악하였다.

(2) 수련시설의 필요수량

수련시설의 필요수요는 크게 시설의 총량규모와 신규로 확보해야 할 시설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먼저 수련활동 참여인구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련시설의 참여인구는 여가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복무 청소년을 제외한 전체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별로 참여인구를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시설소요량을 산출하였다.

(3) 수련시설의 균형조성모델

수련시설 지역별 균형모델은 앞에서 검토된 수련시설 배치여건을 토대로 균형모델의 영향인자를 검토한 후 시설의 확보방안과 설치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황

제1절 청소년수련시설의 분류

1. 수련시설의 유형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시설의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크게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나누어지며, 이는 시설의 규모와 세부내용 등에 따라 다음 <표1-1>와 같이 각각 몇 개의 유형으로 세분된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표2-1>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분류

구 분	시설유형	법규상의 규정	구분 기준	기존 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수련원	실내외 종합수련시설	실내활동시설, 자연체험장, 수영장 등 종합수련시설	수서 청소년수련원, 강원 청소년수련원 등 5개소
	수련관	다양한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시설	다양한 실내 활동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
	수련실	소규모 수련시설	동네단위의 소규모 수련시설	청소년오락시설 놀이마당 등
자연권 수련시설	수련마을	생활관 야영시설 등 종합수련시설	생활관, 야영지, 자연체험시설, 체육시설등의 다양한 수련시설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중 야영지, 생활관, 자연체험시설, 체육시설을 갖춘 시설
	수련의집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	생활관, 기타 시설설비 갖춘 수련시설	심신수련장, 자연학습원 등
	야영장	야영 수련시설	야영활동 위주 야영편의제공 수련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1종~3종	숙박제재에 적합한 시설 부대편의 시설을 갖춘 시설	수련편의제공 수련시설, 시설이용편리성, 부대편의시설의 다양성	유스호스텔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지구, 청소년대표시설, 청소년 이용권장시설이 지정되고 있다.

2. 기존의 수련시설 현황

기존 수련시설의 유형에 따른 시설의 총 규모는 <표2-2>와 같다.

<표2-2>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시설규모 현황

구 분	시설유형	시설특성	개소	총면적(m ²)	수용능력(인)
생활권 수련 시설	청소년 수련원	생활권의 실내/외 종합수련시설	5	13,022,236	5,010
	청소년 수련관	실내활동위주의 수련활동	30	73,208	21,744
	청소년 수련실	소규모 수련시설	154	212,277	20,665
자연권 수련 시설	청소년 수련마을	자연권의 종합 수련시설	22	282,326	24,183
	청소년 수련의집	생활관 중심의 수련시설	88	4,484,319	28,537
	청소년 야영장	야영권의 제공시설	109	2,876,234	57,296
유스 호스텔	제1-3종 으로구분	청소년 숙박 및 재재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지원	24	4,796,300	10,845
합 계			432	297,573	168,280

자료: '96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년, 문화체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련 시설 확충 재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표2-3>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자원계획

구 분	합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437,792	49,877	95,034	100,562	110,361	81,958
공공 자금	소 계	343,966	44,877	74,134	78,036	79,161
	국 고	132,001	11,099	33,756	35,274	30,936
	양여금	82,418	12,287	14,827	17,427	18,412
	기 금	8,036	1,036	1,000	1,500	2,000
	지방비	121,511	20,455	24,542	23,835	27,786
민간자본	93,826	5,000	20,900	22,526	31,200	14,200

자료: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년, 문화체육부)

제2절 한국 청소년의 특성 및 인구현황

1. 한국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에는 갖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취미와 자질을 계발하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교육제도는 청소년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입시 공부에 소요하게 하고 있으므로 여가참여시간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선진국 청소년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하다. 외국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한국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비교해 보면 사회제도와 인식, 활동프로그램 및 여가공간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조사결과에서 조사결과에 나타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을 간략히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정명 외, 1992).

첫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청소년 활동에 무관심하다.

둘째,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활동지도교사가 교과와 활동의 지도에 익숙하지 못하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학교밖 체험활동이 발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청소년활동의 부재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인식의 전환 뿐만 아니라 문화 창조 공간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수련공간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사례: 청소년의 PC통신문

모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갈 곳이 없다. 시험이 끝나고 기껏 할 것이라고는 비디오 한편 빌려다 보는 것이 그나마 건전하게 할 일이다. 그리고 조금 불만만 비디오는 연소자 관람불가이다. . . . 내가 항상 주장해오는 바이지만 스포링은 누르면 누를수록 높이 뛰어 오른다. 모든 청소년관련 문제는 그것에 대한 처벌과 단속보다는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생 청소년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는 남·여학생 및 학교 유형을 막론하고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여행과 관계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에 대한 참여연구 및 시설의 신규확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활권내의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체육시설과 활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생활권내의 체육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일암청소년육성재단, 1996).

청소년들이 수련활동 참여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여가시간의 부족, 소극적인 참여행태 및 여가시간에 이용가능한 시설의 부족 등은 청소년문화의 부재를 초래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고 진작될 수 있는 수련시설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2. 청소년 인구현황과 인구추이

1) 인구현황

① 1994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445만 3천명(인구추계 결과)이다. 연령별 성비는 0-4세 연령층에서는 111.2로 남아가 훨씬 많아 성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② 1994년 7월 1일 현재 9-24세의 청소년인구는 1,312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③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676만 8천명, 여자 635만 3천명으로 성비 106.5%이다.

④ 또한, 연령 구조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4세의 청소년 인구가 34.4%이고, 15-19세 인구는 30.0%, 10-14세 인구는 30.6%, 9세 인구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2) 청소년 인구추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계속 증가하다가 1980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1965년 사이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2.8%로 총인구증가율과 같은 수준이었다. 1965~1970년에는 4.4%, 1975~1980년에는 1.7%이었다.

1980~1985년의 경우 청소년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06%, 1985~1990년에는 -0.6%로 1980년 이후 청소년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960~1990년 사이의 청소년인구는 총 550만 6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전국 증가분의 7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포함)이 흡수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불균형적인 인구집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2-4> 총인구와 청소년인구 추이

(단위: 천명)

연 도	총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청소년인구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1960	25,012	12,551	12,461	7,957	4,073	3,884
1965	28,705	14,453	14,252	9,121	4,700	4,421
1970	32,241	16,309	15,932	11,330	5,849	5,481
1975	35,281	17,766	17,515	12,886	6,652	6,234
1980	38,124	19,236	18,888	14,015	7,216	6,799
1985	40,806	20,576	20,230	13,975	7,188	6,787
1990	42,869	21,568	21,301	13,570	6,988	6,582
1995	44,851	22,576	22,275	12,859	6,644	6,215
2000	46,789	23,559	23,230	11,629	6,063	5,566
2021	50,586	25,505	25,081	9,854	5,104	4,750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1)

제3절 청소년 시설규모 분석

1. 청소년 인구대비 수련시설 규모

1) 유형별 수용규모

(1) 생활권 수련시설

① 현재 기존에 설치된 전국의 생활권 수련시설의 수용능력은 47,419 명으로 이를 청소년 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청소년 1인당 연간 5.64시간밖에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이다.

② 이를 주간으로 계산하면 1인당 6.4분, 하루에 54.7초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시간으로서 이는 청소년이 여가(하루 평균 5.28시간)를 이용하여 수련활동에 참여하고자 해도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③ 청소년 1인당 제공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이용기회 산출방법

○연간 제공가능한 인원·시간: 수용정원의 합계 × 연간이용가능
시간 $47,419 \times 30(\text{시간/주}) \times 52\text{주} = 73,973,640\text{시간}$

○주중 이용가능시간: 평일4시간(14:00-18:00) × 4일(평일중 1일
휴무) = 16시간 주말 이용가능시간: 토요일 6시간(12:00 - 18:00)
+ 일요일 6시간 = 14시간

○청소년 1인당 제공될 수 있는 연간이용시간: (인원·시간)/청소년
인구 = $73,973,640/13,121,000 = 5.64\text{시간/년}$

○청소년 1인당 제공될 수 있는 일일이용시간: 연간이용시간/365일
= $5.64(\text{시간/년})/365 = 54.7\text{초}$

(2) 자연권 수련시설

① 전국의 자연권 수련시설의 수용능력은 110,016명으로 청소년 1인당
자연권 수련활동 과정(2박3일기준)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는 0.54기회밖
에 되지 않는 규모이다.

② 이는 청소년 2-3명당 1명에게 1년 중 1회밖에 제공될 수 없는 규모
일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 과정에의 참여가 겨울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봄 가을 및 여름 방학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 이용가능한 횟수가 훨씬 더 적은 실정이다.

③ 청소년 1인당 제공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의 이용기회

○연간제공가능한 인원: 수용정원의 합계 × 연간 이용가능일수/3
일(2박3일)

○수련마을, 수련의 집: $52,720 \times 270\text{일}(\text{휴일} \cdot \text{보수기간 제외})/3\text{일}$
= 4,744,800

○야영장: $57,296 \times 120\text{일}(6-9\text{월})/3\text{일} = 2,291,840$

○청소년 1인당 이용가능한 횟수: $7,036,640/13,121,000 = 0.54\text{회}$

(3) 유스호스텔

① 전국의 유스호스텔 수용능력은 10,845명으로서 청소년 1인당 제공
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0.27일 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다.

② 이는 7명당 1명에게 1년 중 1박 정도밖에 제공할 수 없는 규모로서 연간 약 1,481,000명(중2, 고2 기준)이 2박3일 내지 3박4일 기준의 전국 학생청소년의 수학여행수요도 수용할 수 없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증가되는 청소년 배낭여행, 국토탐사 활동, 대학생들의 M.T. 등 소규모 단체활동, 가족단위여행 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③ 청소년 1인당 제공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의 이용기회

○연간 제공가능한 연인원: 수용정원의 합계 × 연간이용가능일수 = $10,845 \times 330\text{일(보수기간 제외)} = 3,578,850\text{명} \cdot \text{일}$

○연간 청소년 1인당 이용가능한 일수: $3,578,850/13,121,000 = 0.27\text{일}$

2) 유형별 시설면적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을 참고로 각 단위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야영장 20m^2 /인 이상, 숙박실 2.4m^2 /인 이상, 도서실 1.3m^2 /석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대비 유형별 수련시설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총 수련시설의 부지면적은 0.95m^2 로 나타나며, 이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1개 단위시설인 도서실의 최소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② 청소년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부지면적은 0.041m^2 이며, 이는 생활권 수련시설의 1개 단위시설인 도서실의 최소 규모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③ 청소년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의 부지면적은 0.887m^2 이며, 이는 자연권 수련시설의 1개 단위시설인 숙박실의 최소 규모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④ 청소년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의 부지면적은 0.022m^2 이며, 이는 유스호스텔의 주 기능인 숙박기능을 담당하는 숙박시설의 최소 규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⑤ 전체적으로 청소년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각 유형별 수련시설의 부지면적은 1개 단위시설의 최소 규모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1인당 이용가능 면적에 있어 자연권 수련시설에 비해 생활권 수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생활권 수련시설이 건축물만 갖추고 있음에 비해 자연권 수련시설은 건축물 및 옥외 활동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부지면적의 측면에서 보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⑦ 유스호스텔이 전국적으로 총 24개소로 적은 분포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생활권 수련시설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수련활동지원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3) 지역별 시설면적비교

① 청소년 1인당 수련시설의 면적을 각 지역별로 보면 강원, 제주, 충북, 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수련의집이나 야영장 등의 보유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청소년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 인구규모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역별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불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각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한 수련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③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시설 면적은 0.95m^2 인데 비해 강원지역이 5.34m^2 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 야영장이 많으며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인구규모가 적고 옥외부지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④ 청소년 1인당 수련시설의 면적 면에서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등 대도시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⑤ 청소년 인구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적은 이용가능면적과 주어진 면적에 비해 많은 수용인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그러므로 인구규모가 큰 지역인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시설의

16 수련시설 필요수량 확보 및 지역별 균형모델

확충이 필요하며, 시설의 확충시에는 지역간의 편중·중복현상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표2-5> 지역별 청소년1인당 수련시설 면적 비교

구 분	평 균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 스 호스텔
		소 계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소 계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전국 평균	0.95	0.041	0.005	0.015	0.021	0.887	0.327	0.210	0.350	0.022
서 울	0.051	0.020	0.002	0.011	0.006	0.014	0.014	0.000	0.000	0.016
부 산	0.130	0.017	0.000	0.001	0.017	0.112	0.059	0.004	0.049	0.000
대 구	0.482	0.041	0.032	0.002	0.008	0.441	0.000	0.000	0.441	0.000
인 천	0.431	0.037	0.000	0.018	0.019	0.367	0.000	0.120	0.247	0.026
광 주	0.051	0.027	0.000	0.018	0.009	0.024	0.000	0.024	0.000	0.000
대 전	0.560	0.094	0.000	0.076	0.018	0.431	0.431	0.000	0.000	0.035
경 기	1.165	0.036	0.000	0.016	0.020	1.124	1.181	1.494	0.450	0.005
강 원	5.340	0.145	0.000	0.028	0.116	5.096	3.598	0.288	1.210	0.099
충 북	2.303	0.036	0.000	0.023	0.013	2.000	0.755	0.460	0.785	0.267
충 남	1.590	0.112	0.019	0.042	0.050	1.458	0.316	0.176	0.966	0.021
전 북	0.735	0.067	0.026	0.009	0.032	0.668	0.000	0.140	0.528	0.000
전 남	2.191	0.048	0.000	0.025	0.024	2.131	1.062	1.402	0.667	0.012
경 북	1.266	0.019	0.000	0.008	0.011	1.233	0.078	0.253	0.902	0.013
경 남	0.877	0.019	0.000	0.007	0.012	0.854	0.059	0.742	0.053	0.004
제 주	3.682	0.172	0.056	0.028	0.088	3.511	2.869	0.000	0.641	0.000

자료: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수련시설배치기준

제4절 수련시설 분포현황

1. 유형별 분포현황

부지면적과 시설수를 비교해 보면 강원지역이 2,691,146m² 의 규모에 42개소, 경기지역이 2,005,669 m²의 규모에 56개소, 전남이 1,842,422m² 규모에 45개소이다. 각 유형별 시설의 면적규모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고 1개 시설당 수용인원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휴가

철 등의 이용밀도가 높은 성수기에는 시설의 적정수용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련시설의 수용능력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규모가 산출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용시설의 필요수량 산정시에는 시설의 적정 수용력 및 평균수용인원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련시설의 유형별 분포현황과 면적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6> 시·도별, 시설종류별 개소 및 면적(천㎡)

구 분		합 계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
			소 계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소 계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14	개소	432	189	5	30	154	219	22	88	109	24
지역	면적(㎡)	13,022	568	73,208	212,277	282,326	12,156,853	4,484,319	2,876,234	4,796,300	297,573
서울	개소	18	16	1	11	4	1	1	0	0	1
	면적(㎡)	173,200	68,816	8,260	38,578	21,879	48,987	48,987	0	0	55,397
부산	개소	15	9	0	1	8	5	1	1	3	1
	면적(㎡)	161,201	21,639	0	1,107	20,532	139,054	73,226	4,848	60,980	508
대구	개소	16	14	1	1	12	2	0	0	2	0
	면적(㎡)	359,431	30,864	23,550	1,314	6,000	328,567	0	0	328,567	0
인천	개소	17	12	0	1	11	4	0	2	2	1
	면적(㎡)	222,225	19,327	0	9,457	9,870	189,557	0	61,941	127,616	13,341
광주	개소	13	12	0	2	10	1	0	1	0	0
	면적(㎡)	21,037	11,048	0	7,291	3,757	9,989	0	9,989	0	0
대전	개소	13	11	0	1	10	1	1	0	0	1
	면적(㎡)	196,115	32,772	0	26,592	6,180	150,947	150,947	0	0	12,396
경기	개소	56	15	0	2	13	39	5	23	11	2
	면적(㎡)	2,005,669	62,441	0	27,517	34,924	1,935,011	311,261	850,136	773,614	8,217
강원	개소	42	13	0	2	11	24	2	10	12	5
	면적(㎡)	2,691,146	72,928	0	14,217	58,711	2,568,496	1,813,467	145,092	609,937	49,722
충북	개소	38	13	0	2	11	19	2	7	10	6
	면적(㎡)	1,020,349	16,169	0	10,376	5,793	885,867	334,387	203,846	347,634	118,313
충남	개소	37	10	1	1	8	25	2	8	15	2
	면적(㎡)	1,067,169	74,821	13,005	28,412	33,404	978,395	211,859	118,318	648,218	13,953
전북	개소	28	15	1	1	13	13	0	5	8	0
	면적(㎡)	521,801	47,269	18,399	6,218	22,652	474,532	0	99,410	375,122	0
전남	개소	45	13	0	1	12	31	4	8	19	1
	면적(㎡)	1,842,422	40,616	0	20,718	19,898	1,791,888	892,924	338,235	560,729	9,918
경북	개소	42	9	0	1	8	31	2	9	20	2
	면적(㎡)	1,108,641	16,862	0	7,230	9,632	1,080,398	67,960	222,057	790,381	11,381
경남	개소	34	13	0	2	11	19	1	14	4	2
	면적(㎡)	972,692	21,512	0	8,150	13,362	946,753	65,696	822,362	58,695	4,427
제주	개소	18	14	1	1	12	4	1	0	3	0
	면적(㎡)	659,138	30,726	9,994	5,000	15,732	628,412	513,605	0	114,807	0

자료: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수련시설배치기준

2. 지역별 분포현황

1) 전국적 분포

① 1996년 8월 31일 현재 문화체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총 432개로써 생활권 수련시설이 총 189개소, 자연권 수련시설이 219개소, 유스호스텔이 24 개소 분포되어 있다.

② 경기도 지역이 총 56개소로서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이유는 인구규모에 비해 수련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과 행정구역상 가장 밀집되어 있으므로 서울의 수련활동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2) 지역별 분포

① 지역별로 수련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기존 시설의 질적 개선과 합리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② 각 지역별 보유현황을 보면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은 입지시 보유개수가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생활권 수련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연권 수련시설이 적고, 자연권 수련시설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권 수련시설이 적음을 알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의 분포현황을 시·군·구별로 볼 때, 수련시설의 1개소도 보유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수련시설의 적절한 분포를 위한 배치기준이 필요하다.

제5절 청소년 이용시설

1. 이용시설의 유형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흡수할 수 있고 수련활동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각 유형별 이용시설이 담당할 수 있는 수련활동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의 경우는 공연이나 관람 및 전시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문화유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종합·일반공연장, 극장, 문화유산, 문화·국악원, 전수회관 등은 민속놀이, 실내외 집회, 특별활동기능을, 미술관, 기념관, 도서관 등은 정서함양, 도서열람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이동에 자리하고 있는 현인릉은 태종과 순종의 능으로 넓은 터에 숲이 우거진 곳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역사교육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2) 체육시설은 청소년이 건강증진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 말하며, 수영장과 빙상장, 탁구장, 체육도장은 실내체육기능을, 학교운동장, 롤러장은 실외체육기능을 할 수 있다.

<표2-7>전국 체육시설현황

구 분	숫 자	전 국 체 육 시 설 현 황			
		공 공	학 교	직 장	민 간
운동장	1만2930	52	1만2216	662	-
체육관	925	171	583	171	-
수영장	677	72	128	79	398
기 타	6만5823	2649	9840	1만1949	4만1385
합 계	8만355	2944(4%)	2만2767(28%)	1만2861(16%)	4만1783(52%)

자료 : 뉴스플러스 1996년 8월 22일자(공공민간시설: 94년 12월 기준, 학교직장시설: 93년 12월 기준)

(3) 시설의 프로그램 및 주최행사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시군(구)민

20 수련시설 필요수량 확보 및 지역별 균형모델

회관 및 복지회관은 실내집회, 특별활동기능을 할 수 있다.

<표2-9>주요 이용시설 현황

구 분	시 도 별 현 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계
합 계	1,800	670	368	299	289	388	1,374	892	672	1,059	930	1,196	1,466	1,425	13,065
○공헌시설	265	61	44	43	44	40	125	63	40	42	45	29	67	89	1,015
-종합공헌장	9	5	2	2	2	6	3	4	1	-	1	-	3	4	44
-일반공헌장	11	2	1	4	3	5	10	10	6	7	7	4	13	6	89
-소공헌장	62	14	4	5	5	4	5	4	7	2	3	2	2	12	133
-영 화 관	183	40	37	32	34	25	107	45	26	33	34	23	49	67	749
○전시교육 시 설	197	57	41	19	22	34	62	34	35	25	36	49	28	52	716
-박물관	48	9	5	3	7	8	13	8	9	8	7	5	10	12	157
-미술관	10	-	-	1	1	-	7	-	1	-	-	1	1	1	24
-전시실	33	10	4	4	6	6	28	6	19	14	24	41	13	19	253
-화 당	106	38	32	11	8	20	14	20	6	3	5	2	4	20	282
○지역문화 복지시설	89	48	25	43	23	29	97	58	74	56	100	57	102	69	900
-시군구민회관	18	-	-	1	1	-	14	8	6	8	5	20	15	7	108
-복지회관	42	37	15	33	18	15	20	13	30	21	72	12	65	33	437
-청소년시설	29	11	10	9	4	14	63	37	38	27	23	25	22	29	355
○문화보급 전수시설	8	6	2	6	8	5	32	23	14	21	27	32	30	35	249
-문화원	4	1	2	2	3	4	28	18	12	17	14	24	23	24	176
-국악원	1	-	-	2	4	1	1	2	2	1	9	4	3	2	32
-전수시설	3	5	-	2	1	-	3	3	-	3	4	4	4	9	41
○도서관	1,241	498	256	188	192	280	1,060	713	508	915	722	1,029	1,239	1,180	10,185

자료: 문화체육부(1995년 백서)

필요수량 확보 및 지역별 균형조성 모델

균형조성모델은 수련시설 소요량을 근거로 하여 각 행정구역별, 이용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는 기준임을 뜻한다. 본 균형조성모델은 전국적인 지역단위와 시설의 총량규모 및 청소년의 인구규모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량에 대한 수치이다. 각 지역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는 지역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거에는 수련시설의 설치 및 배치가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필요 및 요구를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절 수련시설의 필요수량 산출

1. 수련시설 필요수요

수련시설의 필요수요는 1996년 현재, 수련시설의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인구를 중심으로 산출하였다.

1) 수련시설의 참여가능인구

수련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가능 청소년 인구규모는 1994년 7월 현재 만 9-24세 인구 13,120,000중 수련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복무청소년을 제외한 11,020,000명의 인구이다.

수련시설의 시설소요량은 수련시설의 유형별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참여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산출하였다. 수련시설의 시설소요량은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가동시간, 가동회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총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자연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연간 총 이용일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 개념을 산출한 후, 수련시설의 각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평균 수용인원을 고려한 공간규모로 산출함을 전제로 한다.

2) 시설소요량 산출방법

수련시설의 시설소요량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3-1> 시설소요량 산출방법

$\frac{\text{참여가능 청소년인구} \times \text{연간 총 참여회수} \times 1\text{회 참여시간}}{\text{연간이용가능시간 (52주} \times \text{주간이용가능시간)} \times \text{평균수용인원}} = \text{시설소요량}$
--

(1) 연간 총 이용시간

① 연간 총 이용시간은 청소년 1인이 1년 동안에 수련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규모를 의미한다.

② 청소년 수련원은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참여회수는 청소년 2명 중 1명이 1년에 약 1회, 수련관은 청소년 1명이 1년에 약 5회, 그리고 수련실은 동네단위의 소규모 시설이므로 청소년 1명이 한달에 1-2번 정도 이용으로 1년 총 10회의 이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수련마을은 4명 중 1명이 1년에 약 1회(1회 2박3일 기준), 수련의집은 1명이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중 이용,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여행 및 사내 연수 등을 고려하여 2회(1회 2박3일기준)와 1회(1회 1박2일기준)의 이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2박3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이용기회는 2.6회 { 2.5일×2회 + 1.5일×1회 = 6.5(일 회) ÷ 2.5일 = 2.6회} 이다. 야영장은 5명 중 2명이 연 1회(1회 1박2일기준)

정도의 이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유스호스텔은 수련 활동참여가능 청소년의 53%가 이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림3-2> 연간 총 이용시간 산출방법

$$\text{연간 총 이용시간} = \text{연간 총 참여회수} \times \text{1회 참여시간}$$

○연간 총 참여회수 : 청소년 1인이 1년 동안에 각 유형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총 횟수를 나타냄

○1회 참여시간 : 청소년 1인이 수련활동에 1회 참여할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냄

<표3-1> 수련시설의 연간 총 이용시간

시 설 유 형	생활권(시간)			자연권(일)			유 스 호스텔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연간참여횟수(회)	0.5	5	10	0.25	2.6	0.4	0.53
1회 참 여 시 간	4	3	2	2.5	2.5	1.5	2.5
연간 총 이용시간	2	15	20	0.625	6.5	0.6	1.25

(2) 연간 시설가동시간

① 연간 시설가동시간은 1년 동안에 수련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한 수치이며, 이는 1년 동안에 수련시설이 이용되는 총 시간의 양을 나타낸다.

② 이는 주로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산출함을 전제로 한다.

③ 연간 시설가동시간은 주간 시설가동시간을 중심으로 산출한 후 1년이 총 52주임을 감안하여, 주간시설 가동시간과 52주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생활권 수련시설(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주간시설가동시간: 30시간

평일 4시간(평일 14:00 - 18:00)×4일(평일 중 1일 휴무) = 16시간토요일 6시간(12:00-18:00) 일요일 8시간

⑤ 자연권 수련시설의 연간 수용가능일수

수련마을, 수련의집 270일(휴일·보수기간 제외)

야영장 120일(6-9월)

유스호스텔 330일(보수기간 제외)

(3) 평균수용인원

① 평균수용인원은 유형별 수련시설의 모형개발 결과 중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인 응용 모형의 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함을 전제로 한다.

② 이는 각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규모의 인원이기도 하고 수련거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인원이다.

③ 수련원(700명), 수련관(500명), 수련실(100명), 수련마을(700명), 수련의집(500명), 야영장(400명), 유스호스텔(500명)

3) 수련시설의 소요량

유형별 수련시설의 시설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권 수련시설

수련원: $(11,020,000\text{명} \times 0.5\text{회} \times 4\text{시간}) / (30\text{시간} \times 52\text{주} \times 700\text{명}) = 20$

수련관: $(11,020,000\text{명} \times 5\text{회} \times 3\text{시간}) / (30\text{시간} \times 52\text{주} \times 500\text{명}) = 212$

수련실: $(11,020,000\text{명} \times 10\text{회} \times 2\text{시간}) / (30\text{시간} \times 52\text{주} \times 100\text{명}) = 1,413$

(2) 자연권 수련시설

수련마을: $(11,020,000\text{명} \times 0.25\text{회} \times 2.5\text{일}) / (270\text{일} \times 700\text{명}) = 36$

수련의집: $(11,020,000\text{명} \times 2.6\text{회} \times 2.5\text{일}) / (270\text{일} \times 500\text{명}) = 531$

야영장: $(11,020,000\text{명} \times 0.4\text{회} \times 1.5\text{일}) / (120\text{일} \times 400\text{명}) = 138$

(3) 유스호스텔

$(11,020,000\text{명} \times 0.53\text{회} \times 2.5\text{일}) / (330\text{일} \times 500\text{명}) = 88$

<표3-2> 수련시설의 시설소요량

시 설 유 형	생 활 권			자 연 권			유 스 호스텔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시설소요량	20	212	1,413	36	531	138	88

4) 장래 필요수량 추정

(1)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참여인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1960년 이후 출산율의 감소로 말미암아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 기회의 다양성 및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증가로 대도시의 인구규모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대도시권의 수련시설의 요구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장래인구의 추계방법은 추진 목표, 추진내용, 기간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으나, 각 지역 청소년 인구규모와 지역 인구 총규모를 단순회귀방정식을 통해 상관관계로 분석하여 다음의 공식을 산출할 수 있다.

(3) 1997-2002년도를 목표년도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인구규모를 예측한 후, 이를 복무청소년을 제외한 84%를 적용하면 11,469,805명(1997), 11,419,843명(1998), 11,397,477명(1999), 11,336,444명(2000), 11,291,990(2001)이 수련시설의 참여가능한 인구 총량규모가 된다.

(4) 시설소요량 산출방법에 의한 수련시설의 시설소요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준

<표3-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및 설치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유 형	규 모	사 업 비	설 치 기 준
생 활 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부지:2,500평 건물:2,500	6,000백만원	시·도별 1개소
	청소년수련관	부지:1,500평 건물:1,500	3,000백만원	시·군·구별 1개소
	청소년수련실	건물:100~200평	6,000백만원이내	읍·면·동별 1개소
자 연 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마을	부지:30,000평 건물:1,000평	2,100백만원내외	이용권역별 1~4개소
	청 소 년 수련의 집	부지:2,000~20,000평내외 건물:300~800평내외	3,000백만원	시·군·구별 1개소
	청소년야영장	부지:3,000~10,000평내외 건물:300~800평내외	6,000백만원이내	이용권역별7~28개소

자료: 문체부(1996), 수련활동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자료집

6) 청서 상에 나타난 수련시설 소요산출량

청소년개발원은 교육과 육성의 조화를 위한 계획서인 청소년육성청서 속에서 교육과 육성의 상호보완기본 모델로서 필요한 수련시설의 소요량을 다음 <표3-4>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3-4>교육과 육성의 상호보완 기본모델

교육 단계 (학년)	학생수 (천명)	1인당 수련시간			활동 구 분	시설유형	수련시설(개소)						
		생활권 활동		자연권 활 동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일일활동	근린속박활동				1996	1997	1998	1999	2000		
초등	438	주당16시간 (280일 기준)	연1회 2박3일 (250일 기준)	연1회 -3박4일 (72시간) -10주 (5%, 84시간) -6주 (5%, 50시간) 연간 206시간 (200일 기준)	생활 활 권 수 련 시 설	수련실	238	252	252	168	168	1,078	
4	137					수련관	10	10	8	6	6	40	
5	139	연간	연간			수련원	1					1	
6	162	640 시간	60 시간			수련의 집	9	7	6	3	6	31	
중등	567	주당16시간 (280일 기준)	연1회 2박3일 (250일 기준)	연1회 -3박4일 (72시간) -10주 (10%, 168시간) -6주 (30%, 302시간) 연간 542시간 (200일 기준)	자연 권 수 련 시 설	수련마을	11	30	35	20	20	116	
1	180					야영장	28	72	70	60	60	290	
2	193	연간	연간			계	297	371	371	257	260	1,556	
3	194	640 시간	60 시간			전국추정	1,277		1,595	1,105	1,118	6,690	
고등	553	주당16시간 (280일 기준)	연1회 2박3일 (250일 기준)	연1회 -3박4일 (72시간) -10주 (10%, 168시간) -6주 (30%, 302시간) 연간 542시간 (200일 기준)									
1	194												
2	170	연간	연간										
3	169	640 시간	60 시간										
계	1,538	연간 평균 1,130시간											

1) 수련시설 수요는 청소년수련활동 수요를 60%로 예측하고 산출한 것임

2) 1995년 4월 현재 서울특별시·군 모델로 추정한 소요량을 근거로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2,009천명), 중학교(2,482천명), 고등학교(2,158명) 등 총 6,649천명(서울의 4.3배)을 기준으로 추산해 볼 때, 2000년까지 6,690개소의 수련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수련시설의 소요를 전량 확보한다고 해도 대만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련시설 수에 해당하는 수치임

앞서 나온 필요 수량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필요수량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필요수량은 청소년의 수련시설 수요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데 그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역별 여건의 구분없이 전지역에 동일하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수련시설은 이용률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며, 현재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1)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 세미나(1995)’에서 제기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① 단기간의 시설 급증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② 수련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 없이 수련시설을 착수하여 허가 받고 미착공하거나 공사중 포기하는 시설이 20%이상이며 준공후 운영이 되지 않아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양도되는 시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청소년 육성기금의 원리금 상환의 문제점 대두

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간 가동률이 저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간 가동률은 30% 미만인 실정이다.

④ 수련활동의 계절적 편향성(각급 학교 학사일정의 동시성) 때문에 4월 - 7월까지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음

⑤ 장급 숙박업소, 콘도미니엄 등 미등록 시설에서의 수련활동

⑥ 수련시설의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과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⑦ 사고를 우려한 일부 교육계 지도자의 보신적 사고에 기인한 행정당국의 빈번한 감사의 반복과 규제

- ⑧ 수련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미비한 시설의 급속한 증가
- ⑨ 수련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일부 부조리 행위
- ⑩ 시설수준의 영세성, 재무구조 취약
- ⑪ 수련생의 질서의식 결여로 인한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
- ⑫ 시설의 안전관리 및 수송수단의 안전 문제 등

2) 수련시설 설치기준의 부적합

생활권 수련시설별 설치기준이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련시설 투자발생이 우려된다.

(1) 청소년수련원(시·도별 1개소)과 청소년수련관(시·군·구별 1개소)은 설치기준상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운용 면에서 그 기능상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시·도단위별로 각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있는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수련원을 실제 설치한 해당 시·군·구 지역에는 별도의 수련관을 설치하지 않고 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읍·면·동 1개소에 각각 설치토록 되어있는 청소년수련실은 기존의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공부방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사례: 청소년수련실

광주 양림동 청소년수련실은 독서실(시설이용공간의 50%, 이용료 무료) 위주로 운영되지만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해당 구청에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치로 운영, 자원봉사자 1명만 상주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청소년수련실인 「청소년문화회관」을 시문화원에 관리토록 하고 시 문화원은 시설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실은 주된 활용공간이 독서실(시설이용공간의 35% 내외)

이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독서실에 국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공부방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도가 저조(평균 10~45%)하다. 다만 저소득층 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실 이용이 다소 높다(이용료가 사설독서실의 1/5 이하의 값). 국무총리행정조정실(1995)의 조사에 따르면;

사설 독서실의 이용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인 1일 1,500~3,000원 정도이며, 청소년수련실의 독서실 이용료는 무료 또는 300원 이하로써 청소년 이용에 부담이 적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설치규모는 25평 이상, 열람석 50석 이상이며, 1995년 7월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공부방은 291개소이다. 1개소당 연간운영비는 1,460만원(지방양여금 및 지방비 각 50%분담, 서울시는 전액지방비 부담)이다.

3) 개선방안

(1) 수련원 및 수련관의 지역별 획일적 설치기준의 조정

시·도에 수련원 1개소 및 시·군·구에 수련관 1개소씩 각각 설치토록 되어있는 기준을 통폐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시설별 연간 수용가능 인원과 활용도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청소년 인구추이를 감안하여 중복투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 인구는 감소추세(년간 2% 정도)에 있다.

(2) 수련실 설치의 지역별 차별화 추진

읍·면·동 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있는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한 지역만 설치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나 공부방이 없는 지역이나, 임대아파트단지나 생활보호대상 가구수가 많은 동 등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의 읍·면의 경우 초·중등학교가 위치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폐교가 있을 시는 폐교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설치계획

청소년수련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 설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시·도별 수련시설 필요 실태조사 실시하여,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정·보완하고, 각 시·도 등의 시설유형별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중·고등학생의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방안 강구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수련시설과 지방교육청·학교간의 유기적인 협조·활용체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수련시설의 시설확보 및 유희시설 활용

1. 시설확보

1) 영향인자 검토

(1) 사회경제적 인자

각 지역의 인구규모와 청소년 인구규모에 따라 시설의 규모를 확정할 경우 확일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우려를 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인구규모 이외에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생활권단위를 고려하여 이를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유형별로 위계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되 접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 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접근가능성 및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수련활동을 전담하는 시설 외에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주변시설의 규모나 분포현황은 상대적으로 수련활동의 수요와 경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규모나 분포현황도 파악하여야 한다.

(2) 환경적 인자

수련시설을 입지시킬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주변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의 수련자원 요소도 검토대상이 된다. 이는 각 시설의 프로그램의 특성을 결정짓는 작용을 하며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현지교육의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추후 수련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권 수련시설이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 관광휴양지, 국립공원, 역사유적지 및 기타 경승지나 명승지를 고려하는 것은 입지선정시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2) 입지선정 기준

수련시설 배치시 생활권 시설은 행정구역 단위로 자연권 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이용권역 단위로 크게 나누어 검토하였다. 생활권 수련시설은 일일생활 중심의 시설이므로 근린지역에서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고 이동시간이 적어야 하므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입지를 선정한다. 자연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숙박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이동이 어렵고 일상적인 수련활동이 불가능하나 이용권역이 다양하므로 이용권역 단위별로 입지를 선정한다.

(1) 생활권단위별 입지선정기준

입지지역의 수련활동수준, 인구규모, 주변의 수련소재(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 등)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이 편리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① 청소년 및 인근거주지역 주민의 의식수준은 수련시설 설치후 수련활동의 효과를 크게 좌우한다.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일 경우에는 학교주변 및 주택가에 입지하는 것이 좋고 근로청소년인 경우에는 공단지역에 입지하여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② 시설간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이나 시설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청소년의 '문화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는 읍·면·동과 같은 소생활권단위를 서비스하는 수련실, 시·군·구와 같은 중생활권단위를 서

비스하는 수련관, 도시차원의 대생활권 단위를 서비스하는 수련원으로 체계적인 시설수준과 위계를 갖는다.

④ 수련활동의 다양화 및 경제성을 고려한 지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자연권의 이용권역별 입지선정기준

자연권 수련시설 또는 유스호스텔의 경우 이용권역 단위로 다양한 자연경관을 수련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자원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① 역사문화유적지, 관광명승지, 기암절벽, 들, 산, 계곡 등의 자연·교육자원을 고려하되 주변의 문화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에 효과가 있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한다.

② 체재·숙박이용이 주 이용형태임을 볼 때, 이용권역 및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위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련시설과 중첩되지 않도록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③ 생활권 수련시설보다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

④ 기존의 수련시설이 주로 국립공원지역이나 기타 관광휴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 환경적으로 수용력이 양호한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

⑤ 특히,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 주로 학교 단위의 일시적인 대규모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 이용권역 및 관광권역내의 학교분포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⑥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련시설의 요건은 입지조건으로 거리관계, 주변경관, 수련시설의 안정성, 경유지, 프로그램 진행의 자유성이다. 그리고 시설규모의 적정성은 관리부, 조리부, 교육부, 업무부 4개부서 24명 이상을 상주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⑦ 주변환경이 어떤 지역인지 또 시설건립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조사함으로써 시설은 주변지역 거주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설치되어야 한다.

3) 시설 확보

(1) 신규로 확보해야 할 시설은 부지를 무조건적으로 확보하는 입장보다는 전국적인 부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지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특히 대도시와 같이 부지난이 심각한 지역은 도시내 짜투리 땅이나 주변의 공공시설,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근린공원 등의 생활권 수련시설의 확충이 가능한 장소를 발굴하여 개발활용하도록 한다.

(3) 신규확보량이 많은 수련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문화·체육시설과 주민집회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며 수련의 수요를 주변의 이용가능한 시설과 분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자연권 수련시설은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을 이용하여 부지를 확보한다.

(5) 신규로 개발되어야 할 수련시설의 부지확보는 지가의 상승에 대비하여 미리 용도지역이나 수련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6) 비교적 지가가 낮은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공공의 목적이 뚜렷하다든지, 이권개입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7) 부지 및 지방비 미확보,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8) 수련시설의 설계시에는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시설 설치 및 기존 환경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9) 청소년 활동의 지역 중심화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적 보조가 있어야 한다.

2. 유희시설 활용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신규 수련시설의 확보보다도 기존 시설이나 공간의 최대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기존의 수련 시설이나 공간 뿐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정서를 심어주고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1) 유희시설현황

(1)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나 폐업으로 유희화 되어가는 시설로서 폐분교, 빈교실, 폐광, 폐공장, 폐염전, 폐가, 폐건물 등을 들 수 있다.

(2) 그 중에서 수련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나 잔존하는 건물의 형태 및 부지의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시설이어야 하고 옥외활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변의 자원확보가 용이한 곳이 좋다.

(3) 이러한 유희시설의 활용은 기존의 시설부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수련시설의 개발로 인하여 청소년교육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4)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한 유희시설로는 폐분교, 빈교실, 폐광 등을 들 수 있는데, 폐분교는 건물의 현황까지 파악이 용이하나 폐광은 부지면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5) 그러므로 폐분교는 시설의 활용까지 폐광은 부지의 활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로 많은 폐교들이 수련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①핵가족 및 교통의 발달, 이농화현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폐분교를 말한다. 기존의 학교시설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련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②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폐·분교를(1995년 9월 현재 542개교) 청소년

년수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체부와 교육부 및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연료정책의 전환으로 폐광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광산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공동화되어가는 광산촌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2) 활용가능한 시설

활용가능한 시설은 휴유시설 중 그 규모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수련시설로 직접적인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먼저 휴유시설 중 수련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검토한 후 앞에서 산출한 지역별 시설소요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산출한다. 활용가능한 시설의 기준은

(1) 폐분교는 보통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평균 교실수는 3.15개이고 평균 교지면적은 $5,699\text{m}^2$ (1,725평)이다.

① 생활관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교사 1개소당 적정수용인원을 20~25명으로 볼 때 평균수용인원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교사가 최소 5개소 이상이 필요하고 옥외활동공간을 고려하면 교정이나 인접되어 있는 적정규모의 주변부지가 필요하다.

② 기존의 건축시설 규모와 주변부지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대부분의 폐분교는 수련의 집으로 개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폐광의 경우 대부분이 $400,000\text{m}^2$ 이상의 규모를 가지며, 수련마을의 경우 생활관 시설 외에 실외숙박시설인 야영장 및 자연체험시설, 체육시설 등 옥외활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면적 및 부대시설(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대부분 수련마을로 활용할 수 있다. 폐광은 광산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폐광촌을 개보수하여 실내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광산의 지표부분을 옥외활동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3. 기존시설 이용의 활성화

수련시설을 새로이 마련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각급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시설, 도시공원, 종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한다. 기존의 수련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하여 청소년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선호시설에 대한 업종 구분과 기조시설 운영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각종 지원 등

을 통하여 신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이용요금의 적정성, 전문지도자 배치,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1) 학교시설 개방 등을 통한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활용

외국의 경우 학교의 시설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교육의 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례: 서울시의 학교

서울시내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1,145개교가 되는데 이 많은 학교시설과 운동장 학교수업의 시간인 오후와 주말에는 비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활용가치가 1/2도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학교 시설을 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방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등과 청소년수련시설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역 유관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수련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사례: 영국 청소년 별관(Youth Wing · Youth Annex)

6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그것을 지역사회 서비스의 장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리고 유스 센터를 종래와 같은 독립된 건물로 하지 않고, 학교, 교회, 빌리자홀 등의 일부를 유스 센터로 하는 것이 많아졌다. 지역사회 학교 교사의 일부에 설치되는 것이 많고, 교사를 신축할 때에 이러한 목적과 겸해서 설계되고 있다. 1976년 지방의회의 전국 연맹이 시설의 공동이용 내지는 다목적 이용을 위하여 작업반을 만들어 그 실태와 현재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과 유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인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통합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센터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이러한 시설에서 학교의 교사가 시간제 청소년활동 강사를 겸비하는 사람이 많아, 인적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학교가 레크레이션 센터, 스포츠 센터, 수영풀장으로서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학교학생에게 야간에는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에게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3)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역사회의 기존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은 종래에는 학교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지역사회 성인들의 교육장소로, 봉사기관으로, 여가선용의 장소 등 지역사회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강당, 체육관, 식당, 의무실, 도서관, 다목적 교실 등을 들 수 있다. 다목적 교실은 식당, 실내놀이장소, 학습활동장소, 학부모회합장소, 지역사회기관 회의장소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교실을 의미한다. 가정관, 음악실, 미술관 등도 야간 성인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 건물들은 본관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지역사회 종교시설, 공공시설을 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한다.

(4) 지역별로 청소년을 위한 상설 ‘문화의 광장’과 ‘청소년 놀이마당’을 지정·운영

공영장, 문화원,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밀집지역을 「청소년 문화광장」 또는 「청소년거리」로 지정하고, 시민공원, 고수부지 등에 농구대,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등 각종 스포츠용품을 대여하는 주말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한다. ‘문화의 광장’과 ‘청소년 놀이마당’에 스포츠교실, 탈춤교실 등 청소년수련거리를 개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순회수련활동을 실시한다.

(5) 수련시설의 비수기의 활용

현재 수련시설의 이용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져서, 성수기 때는 아주 바빠지만 비수기 때에는 수련시설이 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몇몇 시기에 몰린다는 이야기이다. 시설 이용에 있어서 학교행정과의 협조와 시설과 이용단체, 특히 학교 간에 조정을 통하여 일년 내내 골고루 시설이 활용될 수 있게 한다면 기존의 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수련시설들의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의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수를 늘이지 않고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량을 늘일 수 있을 것이다.

4. 민간 참여의 활성화

수련시설의 확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앞장서고,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백화점 및 일정 인원 이상 기업체나 단체 등에 수련시설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

지난 1992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총액의 1/100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수련시설 설치·운영 경비로 지원하도록 지방양여금이 개정되어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 민간참여의 촉진을 위한 세제 및 법령 개선과 조정

건설 관련 법령 못지 않게 청소년 사업과 관련이 깊은 분야가 정부의 각 부처와 다양하게 연관된 다양한 세제에 관련된 법령들 중에서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협의 중에 있는 청소년 관련 및 청소년 시설투자 관련 제법령들을 민간참여의 촉진을 위해 세제 및 법령의 개선과 조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용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데 반해 개정되어야 할 방향은 청소년 시설용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종합토지세를 인하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 시설용 토지 및 건물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처분 및 증과세 대상이었지만 개정되어야 할 방향은 청소년 시설용 토지, 건물을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지방세의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듯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후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청소년 협회와 회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회원단체가 아닌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법령개정의 방향은 비록 회원 단체가 아니라 해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행 법인세의 특징은 청소년 시설용 부동산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 시설용 부동산도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의 부과에 면제를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협회와 그 회원단체에 대해서만 기부금의 송금을 인정하고 있는 법령을 회원단체 이외의 청소년단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부가가치세법

현행 법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산림법

현재 청소년 시설용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의 대부요율이 연 10%에서 5%로의 인하가 필수적이다.

(6)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현행 법에 의하면 생산 제도시설 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민간 기업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법인체의 문제점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방안이다. 즉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이나 운영비를 보조하는 근거가 있지만 청소년 수련사업에 관련된 시설은 정책적 미흡과 현실감각 사이에 괴리가 크다. 특별법에 의한 법인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선택하

는 방법 외에는 없다. 청소년 기본계획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상이자 또 이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는 현실이다. 기획 및 실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과 이상을 접목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의 방향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2항에 잘 나타나 있다. 위의 조항에 의하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청소년 수련사업의 시설의 설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관련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영리추구 금지를 완화시켰다.

민간 기업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게 하여 면세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영리가 아닌데도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③ 청소년 수련시설도 비영리의 정신은 고수하되 이용료의 통제나 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운영비나 관리비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④ 민간이 출연한 시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하고,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토지에는 비업무용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실태 및 세제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개선 건의를 공익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연권수련시설 설치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참여 확대

자연권 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부문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및 이의 합리성 조정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수련마을 · 수련의집 · 야영장을 9개 이용권역별로 일률적으

로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건립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대도시 인근지역에서는 민간부문 참여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상 민간과 공공부문(현재비율 70:30)의 설치비중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지역(경기)과 대도시 또는 공업도시(울산 등)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자연녹지보호 등에 묶여있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민간소유자들이 자연권 수련시설을 설치코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5).

4) 법적 기준

민간인의 참여조장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청소년기본법 제37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68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지원,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개발원 및 상담원의 운영지원,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지역별 균형조성모델

균형조성모델은 제3장에서 산출된 수련시설 소요량을 근거로 하여 각 행정구역별, 이용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는 기준임을 뜻한다. 본

균형조성모델은 전국적인 지역단위와 시설의 총량규모 및 청소년의 인구규모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므로 각 지역별로 적용할 때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균형조성모델의 영향인자

1) 청소년의 인구규모

청소년인구는 균형조성모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로서 지역별 수련시설의 배치수량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각 지역별 청소년 인구규모는 크게 300만 이상, 100만-300만, 40만-100만, 10만으로 구분되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5> 각 지역별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만명)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인구	340	124	75	52	41	35	172	50	44	67	71	84	88	111

시·군·구별 청소년 인구규모는 서울의 경우, 10만-20만명 정도의 청소년 인구규모를 가진 구가 가장 많았고 지방의 경우, 2만-5만명 규모의 시·군·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2) 청소년 여가시간 및 수련활동 참여시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일반적으로 중학생일 경우에는 평균 5.5시간, 인문계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4시간, 실업계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가능시간은 평일에는 4시간 29분, 토요일에는 5시간 59분, 일요일에는 8시간 16분으로 수련시설의 배치시 수련활동에 소요되는 평균 2.5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왕복이동이 가능한 곳에 수련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주변 수련자원

(1) 자연공원 및 국민휴양지

대부분의 교육·역사·자연자원등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내에 있거나 주변에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광휴양지는 자연권 수련시설의 배치기준 설정시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한다.

비교적 공원이 많은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의 경우에는 자연권 수련시설의 배치기준 설정시 타 지역에 비해 수련시설의 필요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사시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충북, 인천의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기능을 분담할 공원과 같은 수련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시설의 신규 확보가 필요하다.

(2) 문화시설 및 문화지원시설

수련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제외한 영화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 지원시설의 배치기준 설정시 유사시설의 중복성, 적정수량의 생활권 수련시설의 확보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은 그 시설들이 수련시설의 기능을 일부 담당해 주기 때문에 수련시설 배치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법적 측면(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수련시설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의무(시행령 제28조 1항)

국가는 2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의무(시행령 제28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당해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 중 1개소를 정하여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수련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생활권수련시설 입지기준(시행령 제20조 관련 별표 5)

일상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4) 자연권수련시설의 입지기준(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

자연경관이 수련한 지역,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부근, 국립·도립·군립공원 및 기타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써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

(5) 유스호스텔 입지기준(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수련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 중인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지역적 균형모델

행정구역단위, 지역 청소년인구, 시설소요량, 접근성, 수련자원 등은 지역적 균형모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다.

1) 지역사회 중심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위주의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나 청소년단체의 형성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과 시설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생활권 수련시설들조차도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필요시설 및 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마련하려는 노력(헌금, 건립위원회 등)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시대적 조류에의 부응

또 다른 문제는 수련시설이 시대에 경향이 뒤떨어지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의 기호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변하였을 경우, 수련시설들의 기존 설비들은 낡은 것이 되어, 청소년들이나 학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또 수련시설의 설비가 청소년들에게 흥미없는 것이 되어버려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조류에도 부합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 및 설비가 많이 갖추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청소년이나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만큼, 다양하고 매력적인 시설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이 가족별로 혹은 개인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내나 인근 공원에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를 타는 가족과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참가할 것이다.

<사례>자전거도로 21km 조성(조선일보 1996년 11월 4일 월요일)

강동구, 2천년까지

강동구는 3일 자전거이용의 확대를 위해 2천년까지 천호대로, 선사로 등 11개도로에 21.7km의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에는 둔촌로 고덕동길 등 16.2km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또 구는 48개소의 자전거보관소를 97년말까지 72개소로 늘리고 공무원 1백40명에게 자전거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김충환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대폭 확충,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도턱 제거 등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의 세계적인 조류는 시설의 복합화이다. 즉 학교기능과 수련활동을 통합시키고, 시설에 있어서도 학교, 수련시설, 성인이나 유아시설

등을 통합하여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커뮤니티 앤 유스센타의 경우 커뮤니티 센타와 유스센타가 한 건물에 있어서, 기능도 서로 보완하고 있다.

이외에 미조직 청소년에 의한 동호인 클럽화의 문제나 청소년교육의 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근년 청소년은 조직이나 시설에 모여서 어떤 뜻에서는 틀에 박힌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의로 자의의 장에서 동호인을 형성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서독이나 일본만의 예가 아니다.

수련시설의 설비 및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의 기호나 경향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만,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외면 당하게 된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지식을 머리에 많이 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빨리 찾고, 또 다양한 시각의 사고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창조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이나 수련활동도 지도자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서 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창조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풀어 나가는 활동 방식이 필요하다.

3) 수련시설 수요의 창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장과 고객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예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에도 마찬가지이다. 레저산업과 청소년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효과적인 수련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수련시설도 꼭 기존의 형태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설립과정에도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수련시설의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학교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만 충실하면 일상생활이 학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실질적 교육개혁이 이루어져 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질곡’을 풀어 주어야 한다.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수련활동이나 수련시설에 대한 정책, 교육정책,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선호도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요인들이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준다. 또한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련시설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수량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수련시설과 수련활동을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결: 앞으로의 과제

1. 수련시설 수요증가 방안 연구

수련시설 수요의 증가는 수련시설 공급의 증가를 창조할 것이다. 반대로 수련시설 공급의 증가가 수련시설 수요를 창조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수련시설 공급의 증가는 민간수련시설들의 운영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점점 공공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 때문에 집단적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과 더불어 많은 여가 활용시설이 늘어나서, 일본 청소년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현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수련시설 운영자의 말을 빌면, 학교 관계자들에게 일정한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생들 유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현재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이 현재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수련시설이 모자란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사 례

한 자연권 수련시설 운영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부터 수련시설을 거쳐가는 연간 청소년의 수가 2/3로 줄어들어서 시설의 운영이 아주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전에처럼 위에서 수련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학교 교장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고,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요즘 많이 생기기 시작한 고급 여가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수련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련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에서의 투자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2. 수련시설의 매력성 증진

기본계획에서의 필요수량이라 함은 수련활동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련활동의 매력성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들이 주로 극기 훈련이나 청소년들의 흥미를 별로 끌지 못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진 까닭에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꺼린다. 수련시설에서의 활동과 생활이 그 자체로 매력을 가지지 못하여 점점 청소년들이나 학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면 양적으로 수련시설의 수를 늘이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련시설의 매력성이 높아져서 그것을 찾는 청소년, 가족, 청소년단체가 증가한다면 저절로 수련시설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련시설들이 청소년들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체육시설과 체육활동이라고 한다(일암청소년육성재단, 1996). 특히 생활권 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생활권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요는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생활권수련시설에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실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3. 현장 중심 서비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에 청소년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시에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4. 외적조건의 개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들이 어떻게 되어 할 것인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수련시설의 외적인 조건들 즉, 사회조건의 정비나 입시제도로 비롯한 교육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입시부터 풀어주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을 다양한 수련시설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단기간내에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활발하고 활동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육성에 관한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의 전개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될 때, 청소년활동의 장으로서의 수련시설은 자연히 필요한 만큼 설치가 되어질 것이다.

5.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청소년 시설의 운영체제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학교시설에 준하는

각종 혜택과 조건의 제공 등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련시설의 근무자나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의욕의 고양을 위한 각종 사회적 조건이나 근무환경,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수련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6. 정보서비스 및 홍보의 강화

얼마 전 신문에 전국 국립공원 소개 소책자가 출간된지 얼마 되지 않았아서 수만 부가 팔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수련시설로 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수련시설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홍보를 통하여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 및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련시설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련시설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운영자 협의회에서 정보운영을 통해 각 시설별로 이용요금과 통로를 적극 홍보하거나 이용상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알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 등 휴일 기간 동안에 가족 단위나 친구 등 소집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적극 유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자율성에 의한 수련시설 확보

지역주민 자율성에 의한 수련시설 확보는 시설 운영의 자율화, 지역사회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수련시설 마련,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보장한다. 지역사회에서 필요시설 및 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마련하려는 노력(헌금, 건립위원회 등)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자율성 위주의 시설운영

수련시설이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단체적·일률적으로 수련활동교육

을 행하는 기존의 수련활동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흥미와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학습을 하는 학습 및 활동 센터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여러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활동 및 교육을 해 나가고,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를 받고 싶은 청소년이나 지도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지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을 조직하여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또 자발성이나 창의성의 신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생활권이나 자연권의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즉 생활권 수련시설에서는 음악실이나 컴퓨터실, 인쇄실, 도서관 등을 마련해 놓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권에도 청소년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끼리 참여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선택하여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지도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스로 활동을 한다. 미오코 국립소년의 집의 경우 가족 단위의 활동이 참여형태나 참여인원 면에서 제일 많았다. 청소년단체나 학교가 아닌 청소년집단의 참여형태도 수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2 참조).

참고문헌

- 국무총리행정조정실(1995),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개선방안.
김정명 외(1992),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도종수 외(1991), 청소년 수련터전 실태조사와 소요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문화체육부(1996), 1996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 백서
양병희 외(1993),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기준연구, 문화체육부
유병림 외(1993), 청소년수련시설 설계기준 및 모형개발연구, 문화체육부
이범재 외(1993), 대형건물의 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이재욱 외(1994), 발로 쓴 세계청소년의 생활과 미래, 실록출판사
일암청소년육성재단(1996), 강북구 중학생의 여가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조용하(1988), 청소년 교육의 동향,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샷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 세미나 자료집
황창순 외(1992), 청소년 수련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투자확대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부록1: 청소년시설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에 충만하며, 이웃과의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 · 복지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의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95. 12. 29>

6. “청소년 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 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21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①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 12. 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5. 12. 29>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93. 3. 6, 95. 12. 29>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 1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 3. 6, 95. 12. 29>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 12. 29>

제26조의 2(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

설 95. 12. 29.>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의 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제2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 12. 29.>

제26조의 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신설 95. 12. 29.>

1.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제1호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5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

로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95. 12. 29.>

③제26조의 3 및 제26조의 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5. 12. 29.>

제28조(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등) ①수련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신설 95. 12. 29.>

②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 3. 6. 95. 12. 29.>

제29조(시정 명령)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기준 및 안전기준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3. 3. 6. 95. 12. 29.>

제30조(금지 행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5. 12. 29.>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신설 95. 12. 29.>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신설 95. 12. 29.>

제31조(허가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93. 3. 6. 95. 12. 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의 명령을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신설 95. 12. 29.>

②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3. 3. 6, 95 12. 29.>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95. 12. 29.>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2회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때<개정 95. 12. 29.>

3.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 12. 29.>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 3. 6, 95 12. 29.>

제32조(수련비용등)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이하 “수련비용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개정 95.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비용등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 12. 29.>

③수련비용등의 기준 기타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 3. 6, 95 12. 29.>

제33조(보험가입)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 3. 6, 95 12. 29.>

제34조(수련시설의 승계)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상속·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95. 12. 29.>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그 승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95. 12. 29.>

제34조의2(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휴지하였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95. 12. 29.>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5. 12. 29.>

③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5. 12. 29.>

제35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청소년이용시설) ①수련시설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안에서 수련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5. 12. 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 12. 29.>

제37조(민간인의 참여조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개정 95. 12. 29.>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축림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개정 95. 12. 29.>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9.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허가<신설 95. 12. 29.>

①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 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 1. 7, 95 12. 29.>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의 신고

2. 공공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 중 理容業·미용업 또는 전자유기장업중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 동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개정 95 12. 29.>

5. 우편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편류판매사업의 허가 및 사설우체통설치의 승인

③시·도지사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5 12. 29.>

제39조(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의 설립)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 3. 6, 95 12. 29.>

②시설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설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록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설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은 청소년기본법 개정(1995년 12월 29일)에 따라 신설 또는 개정된 각종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6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안의 내용이며 수련시설과 단체에 관련된 제4장과 제5장의 개정된 내용이 중심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7조(수련시설의 종류)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 3. 6, 96. 6. 30>

1. 생활권수련시설 :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원 : 실내 및 옥외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관 :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수련시설

다. 청소년수련실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소규모 수련 시설

2. 자연권수련시설 : 주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마을 :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야영시설등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의 집 : 생활관등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를 실시하는 수련시설

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 설비와 부대
·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
제2종 및 제3종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개정 96. 6. 30>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8조(국 · 공립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여야 할 수련시설은 다음
과 같다.

1. 국가는 2이상의 시 · 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2. 시 · 도, 시 · 군 · 구는 각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
활권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3.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하는 수련시설중에서 각각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련시설
(이하 “대표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대표수련시설
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
정 96. 6. 30>

가. 개발원등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상설 운영 · 보
급 및 운영지도

나. 개발원과 수련시설간을 연결하는 협력 · 지원체계의 구축 및
수련활동관련정보의 교환

다. 관찰지역안에서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 ·
관리 및 개발원예의 통보

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개정 96. 6. 30>

제29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6. 6. 30>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설치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이 2이상의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 제33조에서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6. 6. 30>

제30조(수련시설의 배치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련시설이 그 종류별·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인구·자연경관·수련소재·교통여건·행정구역 및 당해지역의 수련시설 수요등을 참작하여 수련시설의 지역별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6. 6. 30>

제31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3. 3. 6, 96. 6. 30>

1. 부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변경<개정 96. 6. 30>
2. 건축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변경<개정 96. 6. 30>
3.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신설 96. 6. 30>

4.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운영하는
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신설 96. 6. 30>

5.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신설 96. 6. 30>

제32조 (수련시설의 휴지·폐지) 삭제<96. 6. 30>

제3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6. 6. 30>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96. 6.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련시설의 대표자 변경(법인·단체의 경우를 말한다) 및 기타 등록증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6. 6. 30>

제33조의 2(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96. 6. 30>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중 교직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 요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6.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7.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96. 6. 30>

③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수련시설운영책임자를 선임(변경선임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6. 6. 30>

제34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수련거리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 중에서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개정 93. 3. 6>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개발원등에서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기타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3. 3. 6>

제35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 3. 6>

1.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 6. 3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련시설이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표수련시설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3. 3. 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청소년단체등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들의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당해 단체들의 수련시설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96. 6. 30>

제36조(수련시설의 이용) ①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3. 3. 6>

1. 법인·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개정 96. 6. 30>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 사무실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실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수련활동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 6. 30>

제37조(청문절차)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93. 3. 6, 96. 6.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수련시설 폐지의 제한) 법 제34조의 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개정 96. 6. 30>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음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제38조의2(청소년이용시설)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96. 6. 30>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5.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7.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회관
8.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9.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10. 시민회관·문화원·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11.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의 여가·문화·체육활동 및 만남등을 위한 장소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96. 6. 30>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운영경비의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지원등을 할 수 있다.<신설 96. 6. 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6. 6. 30>

제39조(협의기간)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21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스호스텔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4종 유스호스텔은 이 규정에 의한 제3종유스호스텔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부터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해온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유스호스텔의 종별구분)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스호스텔의 종별 구분의 기준은 별표5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협의 및 허가서류등) ①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3. 10. 19>

1. 설치계획서(설치목적,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명칭, 위치, 사업기간, 소요자금, 세부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계획서(운영할 청소년 수련거리, 예산, 조직 및 정원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제 제5호서식에 의하되,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③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93. 10. 19, 94. 12. 20>

④ 및 ⑤삭제<93. 10. 19>

제17조(휴지·폐지승인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8조(등록신청서류)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3. 10. 19>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수련시설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5. 청소년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6.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사영검사필증 사본

7. 당해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등의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9.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9조(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5 내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생전용 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정명령)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위반 또는 미달내용·시정사항·시정기한 및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등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수련시설의 영 제3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이용자수를 합한 수가 당해 수련시설의 연간 이용가능인원의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93. 10. 19>

②영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

는 경우”라 함은 당일에 한하는 집회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3. 10. 19>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3. 10. 19>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93. 10. 19, 94. 12. 20>

③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이용료의 승인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이용료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이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이용료산출명세서
2. 당해 연도 예산서
3. 전년도 결산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 이용료의 지역간 균형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3. 10. 19>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변경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93. 10. 1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료산출명세서·당해연도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2.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수련시설 이용료 변경추세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4.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 이용료 현황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의 기준

④시·도지사는 이용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이용료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를 당해 수련시설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이용료승인서를 잃어 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련시설 양도·양수등의 승인신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양도·양수(수련시설 설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양도·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0. 19>

1.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신원증명서

2. 양수법인 또는 합병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는 한한다)

3. 당해 수련시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4. 양수인 또는 양수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부 칙

제3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6조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보거나 등록한 수련시설로 보는 청소년시설은 등록증을 교
부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록2 : 일본 수련시설 방문기

목 차

1. 4월 3일 월요일: 일본으로 출발
2. 4월 4일 화요일: 국립 올림픽 기념 종합센터
3. 4월 5일 수요일, 4월 6일 목요일:
국립 중앙 청년의 집
사단법인 전국청년의집 협의회 개요
미오코 국립 소년의 집
(MYOKO NATIONAL CHILDREN'S CENTER)
4. 4월 7일 금요일: 동경도 청소년 센터
정부 간행물 센터
일본 청소년 연구소
5. 4월 8일 토요일: 한국으로 출발

방문 목적: 일본 청소년 시설 시찰과 국제화 감각을 익힘

일본 시설 방문기

1995년 4월 3일 월요일: 일본으로 출발

4월 3일 오전 8시에 김포 공항 신한은행 환전소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8시에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짐을 부치고, 장터 국수집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30분에 한국을 출발하였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리무진을 타고 오후 한시쯤 신주꾸 역에 도착했다. 고속도로 옆에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다는 것과 간간히 대나무 숲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 왔다. 신주꾸 역에서 만나기로 한 정의봉 사무관이 보이지 않아서 두시간 가량 기다렸다. 주변의 게이오 백화점도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며 옷차림 등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표정은 많이 다르다. 한국 사람의 표정에는 거친 힘같은 것이 더 많고, 일본 사람의 표정은 사회의 규칙에 더 많이 길들여진 듯한 느낌이 든다. 옷차림은 신주꾸 거리가 일본의 최고 화려한 거리이기 때문인지, 아주 세련되어 보였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의봉 사무관이 길 건너 정류장에서 기다리지는 않을까 건너가 보고 하면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올림픽 센타(정식명:국립 올림픽 기념 종합 센타)에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정의봉 사무관이 올림픽 센타에 있다고 한다. 올림픽 센타로 가는 길을 물어서 전철을 타고, 상꾸바시 역에서 내려 걸어서 올림픽 센타를 찾아갔다.

올림픽 센타에 도착하니, 정의봉 사무관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를 맞았다. 우리가 신주꾸 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는 시간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본부에 둘러, 여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을 정하여 들어 갔다. 일본에서는 명함을 주고 받는 것이 상례이고, 상대방의 명함을 받기만 하고 자기의 명함을 주지 않는

것은 실례라고 한다. 일본을 방문할 때에는 명함을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센타 경내는 깨끗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었으며, 바야흐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백꽃이며, 다른 여러가지 꽃들도 피어 있었다.

방을 대강 정리한 후에 신주꾸 역으로 나갔다. 신주꾸역 주변에 위치한 도경도청, 가스공사, 호텔, 백화점 등을 돌아보았다. 건물들이 모두 독특한 양식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 전공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시청의 46층 전망대에 올라가기로 하였지만, 월요일이라서 쉬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의봉 사무관의 안내로 비교적 싸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식사와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4/4일 화요일: 올림픽 센타

고바야시 계장의 안내로 오전에는 시설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올림픽 센타의 시설들과 활동들을 소개받았다. 오후에는 조사연락 과장의 안내로 시설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시설 안내를 받는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는 건물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의 모양을 바꾸어 지었다는 것이다. 건물이 큰 나무를 싸안듯이 둥글게 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오래 된 나무를 중시 여기는 풍조는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시청 앞의 커다란 나무들에게 형짚을 잔가지에 까지 감아 놓은 거며, 왕궁의 소나무를 보살펴 놓은 거며, 나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저녁에 정의봉 사무관의 안내로 신주꾸 역 근방을 관광하였다. 한국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거리도 가보고, 신주꾸의 옛거리에도 가 보았다. 특이한 것은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동경의 교통 체증을 예상했는데 차가 별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차들을

다 집에다 두고, 주로 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버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차들이 교통 질서를 아주 잘 지킨다. 급하게 달리는 차가 없으며, 횡단 보도에서 3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정차 지점에 정확히 정차를 한다. 건널목의 과관불이 켜지는 시간도 우리나라 보다 2-3배 정도는 긴 듯하다.

저녁 6시 30분쯤 회전 회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하였다.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 앞으로 두 덩이의 회초밥이 담긴 접시가 돌아가고, 손님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접시를 들어내서 먹게 되어 있었다. 무늬가 있는 접시는 200엔(1,800원), 무늬가 없는 접시는 100엔(900원)이었다. 6명이 배부르게 먹은 총액이 6,500엔(6만원 정도) 정도 나왔다.

동경의 물가는 유명하지만, 특히 맥주가 비싸다. 신주꾸의 한 곳에서는 300cc 한컵에 850엔(8,000원) 한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하지만 아주 한가한 시간에는 맥주 300cc 한잔에 100엔까지 한다고 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요금들도 시간 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책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올림픽 센타: 1965년 건립하여 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올림픽이 끝난 뒤에 올림픽 센타로 사용. 특수 법인에서 1980년에 문부성 직할 시설로 바뀜. 넓이 약 90,000평방미터. 1994년 개축 공사를 시작하여 1/3 정도 완성하였음. 2,000년까지 공사를 완성시킬 계획.

올림픽 센타에서 하는 3가지 중점 사업은

- ① 청소년들이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② 청소년 교육관계 자료(정보)를 수집하여 청소년 지도자에게 제공하는 것.

전국의 시설, 프로그램들을 조사 연구하여 전국 1,250개소의 시설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어디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어디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등등의). 이제까지는 정보를 문의해오면 제공해주었는데, 이제는 전자 정보망을 통해 17개소의 센타를 연결시키고 있다.

3년 후에는 정보 센타를 건립하여 정보센타를 통하여 시설 정보,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정보센타는 도서관, 전산실, 정보를 수신하고 제공하는 통신시설 등을 갖출 것이라고 한다.

③ 자체 기획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업과 전국의 청소년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그밖의 주취사업들: 청소년 지도자 연수, 심포지움, 국제 교류 사업, 아동 대상 사업,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토·일요일 활용방안 모색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종류별로 봉사자들을 양성, 일반인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이제까지는 너무 학교 교육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 이제는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평생 교육·전인교육을 강조하게 되어서, 청소년 시설들에의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에 올림픽 센타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정보 제공, 매스컴에 요청하는 정도라고 한다. 전국의 국립 수련 시설로는 국립 청년의 집이 13개소, 소년의 집이 14개소가 있다. 그밖의 수련시설이 전국에 1,250개가 있다.

올림픽 센타에서는 최근 과학 교실이란 프로그램을 시행해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일본 학생들이 점점 이공 계통을 멀리 하는 경향을 우려해서 과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재미있는 실험, 실습, 제작을 직접 해 보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연간 70~90만명 이라고 한다. 그 중에 한국 사람의 숫자도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의 청소년 시설이 특이한 점은 그 시설을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용하고, 기업의 연수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숙박시설: 1인, 2인, 4인, 단체 방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번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국제교류 관계자, 청소년 지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식 시설과 개별적인 방에 목욕탕과 화장실을 공통으로 쓰도록 설계된 시설들이 있음. 호텔식을 제외한 숙박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청소해야

함. 필요한 물품들은 직접 받아서 사용후 반납함. 숙박시설 입구에는 귀중품 보관함(비밀번호식), 세탁실, 자판기들이 있음.

국제 교류 건물에는 국제 회의실 (250석, 비디오 시설, 영상 시설, 5개국어 동시통역을 레시바로 들을 수 있음), meeting room, 소회의실, Reception Hall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이용자 수에 따라 방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시설(각종 프로그램 소개, 여러 나라 언어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음). 휴게실에는 생필품 판매시설과 멀티 비전 및 TV가 설치되어 있음.

소요예산은 64억엔 (수입액 4억 4천만 엔 정도, 2/3정도를 국가에서 지원), 관리직원은 62명 (모두 문부성 직원)

시설사용요금은 비교적 싼편으로 여겨진다. 실에 따라 2/3, 1/2, 1/3씩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할 때의 가격은 전체를 빌릴 때의 가격의 2/3, 1/2, 1/3의 비율이다. 또한 청소년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일반단체 사용료의 1/2의 가격이다.

4/5수요일, 4/6일, 목요일: 국립 중앙 청년의 집

아침 10시 15분에 중앙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주꾸 역에서 고속 전철(2,620엔)을 탔다. 1시간 30분 가량이 걸린다고 한다. 일본 동경으로 흘러가는 셋강들이 참 깨끗해 보였다. 우선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배들도 많이 보였다. 신주꾸 거리에는 빠짱꼬 하는 곳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 중앙 청소년의 집 가까이에 있는 어전장(고템바) 역 근방에도 대형 빠짱꼬 집이 두곳이나 눈에 띄었다.

어전장 역에서 버스로 15분 언덕을 올라가 중앙 청년의 집에 도착하였다. 중앙 청년의 집은 후지산 중턱인 해발 700미터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뒤쪽으로 후지산이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의 탁자에 둘러 앉아 계장에게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소장실에서 소장과의 일본 청소년의 문제에 관해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는 후에 시설을 돌아 보고, 설명을 들었다. 몇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시설 돌아볼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면서도, 설명도 꼼꼼하게 하고, 시설도 내부까지 살살이 보여 주었다. 저녁 6시쯤 국기 하강식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모두 모여 있는 수련원 직원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 왔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 신입사원들로 '니산'이나 '오다큐'와 같은 기업 이름들이 적혀 있는 츠리닝들을 입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계장은 아침에 국기 게양식에 참석하여 사람들도 만나보라고 했다는 소장의 말을 전한다. 일본 국기 게양식에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참석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국기 게양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4/6일 아침 기상을 알리는 방송에 잠에서 깨었다.

우리가 방문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일장기 옆에 태극기를 게양해 놓고 있었다. 안내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계장에게 가지고 간 선물을 전달하면서 하나는 소장의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계장 자신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은, 계장과 소장 사이에 위계상 과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계장은 선물을 우선 소장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준 선물을 과장의 책상에 조용히 올려 놓았다.

프로그램 지도자는 6명으로 주로 학교 교사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파견 근무 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이 곳에 있는 다른 정규 직원들은 주로 문부성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동경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람과 현재 일본 교육과 학생들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 잡지의 선정성은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네 서점이나 슈퍼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에도 누드 사진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야한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특히 만화는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항의 식당에서도 그런 만화들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

이 만화를 좋아한다는 것과,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그런 잡지에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청소년들이 간간이 그런 잡지를 보기는 해도 크게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결혼전에는 여자들이 남자와 만나고, 육체관계를 가지고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자유 분방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결혼의 규칙에 충실하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잡지나 대중 매체에 만연되어 있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설에 파견나온 그 교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한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성향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고 있다고 한다. 1945년 이후 차차 그런 개인주의 성향으로 되었다. 학교 통학로만 어느정도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하여 18세에는 성교육이 완료된다. 자신의 입장은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 폭력성에 대해서는 현실과 Comic 속의 폭력은 구분된다. 일본 사람들은 현실 속의 폭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경계를 한다. 하지만 만화나 잡지 속의 폭력은 그저 가상의 세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신주꾸 변화한 거리를 나서보면, 아주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도 없고, 싸우거나 다투는 사람 없이 질서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서로에게 아주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도부터 일본에서는 새로운 학력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대학이나 기업에서 자원봉사나 다른 체험활동을 입시에 신입사원 채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의 성격에 따라 한두 과목만을 잘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시작했다. 반영 정도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국공립에서는 5년전부터 20% 정도 반영하고 있고, 사립에서는 반영률이 더 높다고 한다. 평가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자원봉사, 스카우트 포상 등을 점수로 환산한다고 한다. 시험을 안 치고, 고교 성적이나 봉사활동 등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을 뽑는 대학도 있다. 국립 수련시설에서의 자원봉사자 양성 사업은 자격증 발급을 통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사진도 찍고 시설도 한번 더 돌아보려고 캠프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프로그램 담당 파견 교사가 급하게 다가와 떠나기 전에 식사비를 식당에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한국 같으면 기관에 외국 손님이 방문하면, 식사비도 받지 않았을 뿐 더러 선물까지 주었을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론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더치 페이가 철저하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여자 친구와 식사를 해도 각각 식사비를 따로 내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친구 여러명이 택시를 같이 타면 각자 자기 몫의 택시비를 잔돈까지 계산해서 지불하며, 친구가 한끼 식사를 사주면,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으로 한끼 식사를 다시 빗 값듯이 사준다고 한다.

오후 2시에 동경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니까, 20명이 넘는 전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배웅을 나왔다.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행 중에 한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10분 정도 늦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수련원의 모든 직원들이 10분 동안이나 밖에 서 있어서 민망하였다. 청소년의 집에서 마련해준 소형 버스를 타고 역까지 왔다. 역 근처의 서점에 들어서 책 구경도 하고, 일본의 실상에 대한 자료로서 일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3권을 샀다. 내용이 한국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 야해서 김포공항 통과할 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등, 자료부에서 받아줄지가 의문이라는 등의 말들이 많았다.

밤늦은 신주꾸 거리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건물의 처마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루꾸로 임시 집을 짓고 잠을 자고 있었다.

거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었다. 전철 운행이 끊어진 신주꾸 지하 역은 완전히 집없는 사람들의 숙소가 되었다. 반면 신주꾸역의 안 쪽의 거리들은 비가 오고 있고, 밤 2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분뻗다.

국립 중앙 청년의 집: 1963년에 설립된 최초의 청년의 집이다. 원래는 일본군 소재지였으나 45년 이후 연합군의 주둔지였다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기 때문에, 사회를 밝게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밝은 분위기를 불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처음 목적이었다고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연 10-11만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그 중 외국인 이용률이 7-8%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중 60%가 한국 사람으로 연간 4,000명의 한국 사람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기업 시찰 혹은 연수를 나왔다가 후지산도 볼 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한다. 외국인들도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숙박은 무료이며, 식사는 한끼당 600엔 (3식 1,698엔, 아이들은 식비를 조금 적게 받음) 정도를 받고 있다.

11-2월까지는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1년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유도, 검도, 궁도, 후지산 등산, 하이킹, 캠핑, 다도 등 다양하다. 청년의 집이 후지산 기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지산 등반, 후지산 식물군 조사, 암석 조사 등 후지산 중심활동을 많이 한다. 후지산 등산 프로그램은: 청년의 집 ---> 후지산 입구(45분 소요) ---> 후지산 등정(8시간 소요) ---> 정상에서 하루 자고 새벽에 일출을 보고 하산 (3시간 소요). 7-8월경이 기후 조건으로 가장 적합.

기상과 식사 시간만 정해져 있지 그 밖의 활동은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 활동은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준비해온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 연수자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한다고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활동 지도를 해준다. 이용

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Self-Service가 원칙으로 방 청소, 시트 갈기, 세면실 청소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다.

수련원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기업의 신입 사원 연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 동반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영리, 정치, 종교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이 요즘와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데, 그 이유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있지만, 요새 청소년들의 성향이 이러한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스키장엘 간다든가, 혹은 다른 활동을 하는 등의 개인의 취미 생활 위주로 여가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도 연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천만명이 넘으며, 일본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수련시설을 거쳐간다고 한다.

전국에 국립 수련시설은 약 27개소가 있고, 그 중에 ‘국립 중앙 청소년의 집’에서 전체 국립 수련시설들 간의 정보 교환 및 관계자 교류를 주관하고 있다. 일년에 한번씩 청년의 집 소장 회의를 개최하며, 일년에 두번 실무자 회의를 개최. 전국 청년의 집의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의 자료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서 하는 활동들도 있다.

○ 학교에 가지 않는 이틀(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청소년의 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활동 실시 (등교 거부 학생들에 대해서 자연과의 합일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일들은 ‘중앙 청소년의 집’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역의 협력, 관계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다. 가정, 학교, 지역이 서로 협력할 때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 이루어진다.

○자원 봉사자 양성

시설물:

○Camp Zone: 2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Camp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어 편리함. 방한을 위한 옷 이외에는 모든 캠핑 도구를 빌려줌. 그리고 음식 재료는 숙박시설에서의 재료보다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부탁하면 식비 안에서 가능하면 공급하여 줌. 우천시는 커다란 목조 집이 있어서 그 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음. 목조 집 안에는 TV, 노래방 등이 있음.

○공동 목욕탕: 공동 목욕탕은 목욕탕 앞의 남녀 표지만 바꾸어 가면서 남녀가 번갈아 쓰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식당: 230명 수용, 부페식 (4일 마다 같은 메뉴, 한달마다 전면적으로 메뉴를 바꿈)

○연수실(30명), 학습실(60명), 레크레이션장(150명), 시청각실, 강당 (600명 수용: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연극 공연 등에 사용) 유도장, 검도장, 대형 운동장, 테니스장, 다도장, 담화동, 체육관 (장비 일체 제공),

○국제 교류실.

운영 요원: 직원 28명 중 프로그램 지도자 6명은 학교 교사들이 파견나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은 문부성 직원으로 3년 후에는 다시 문부성 본부로 돌아간다. 파견 근무 동안에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호텔직원의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단지 손님의 개념이 아닌 교육적인 개념도 함께 가지고 시설 이용자들을 대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 추세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은 충분하며, 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 기업체가 시설을 이용함.

'95년도 국립중앙청년의집 주최사업 안내

◆ 스포츠·레크레이션

사 업 명	개최기간	요일	대 상	모집 인원	모집기간	내 용
청년의집 축제	5월21일(1일)	일	누구든 마음 편안히 오시오			즐거움 1일 가족 행사
해발3,776M 부사산 (후지산) 등산	7월26일-7월28일(2박3일)	수-금	청소년일반 초등5년이상	100	6월20일-	후지산 정상 등산
95년도 스포츠 웨스티발	9월23일-9월24일(1박2일)	토-일	청소년일반	60	8월 20일	즐거움 생활 스포츠 테니스 입문
외곽 자연거 드라이브	H8.1월13일-1월15일(2박3일)	토-월	청소년일반	30	12월 1일	마운틴바이시클(산악자전거)기술과 자연환경의 조화

모집은 행사 시작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습기회 및 자연관찰

사회교육 자원자 양성연수I	5월3일 -5월6일 (3박4일)	수-토	고교생 대학생 등	30	3월20일-	처음 경험한 자원봉사 세계와 우정을 같이
유전자와의 만남	8월22일 -8월23일 (1박2일)	화-수	고교생 등	30	7월 1일	생명과학 최첨단
알기쉬운 자연사 세미나	8월28일 -8월30일 (2박3일)	월-수	고교생 등	30	7월1일-	자연의 성장과정을 걸 으면서 살핀다.
부사산 촬영 및 그림그리기	11월25일 -11월26일 (1박2일)	토-일	청소년일반 (소학생 이상)	100	10월10일-	후지산에서 관찰, 사진 촬영, 그림

◆ 각분야 지도자 교육 및 연수

사회교육 자원봉사자 양성연수Ⅱ	8월7일 -8월 12일 (5박6일)	월-토	대학생등	20	7월1일-	처음으로 체험한 자원봉사활동 행하 며 세계와 우정을 함께함
국제적 젊은 지도자 연수	10월10일- 10월12일 (2박3일)	화-목	학생·청년 또 는 일반	30	9월1일-	당신의 시야를 넓 히며 가다듬는 인 간관계, 국제감각 을 익힘
전국청소년교육 시설직원	11월7일 -11월9일 (2박3일)	화-목	청소년교육시 설직원등	30	10월1일-	민간기업의학“제2 탄” 기술을 따라 잡아라
교육담당자 세미나	96.2월14일 -2월16일 (2박3일)	수-금	학교·청소년 단체·기업교 육담당자	30	1월10일-	숙박연수담당자에 게 매력적인 프로 그램 제공

◆ 제2·제4토요일 가족들이 의미있게 보내게 하는 사업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가을, 겨울 친체관측, 후지산 사생모임(그림)
등 활동. 모집인원은 25-100명.

사 업 명	개최기간	모집 인원	대 상	모집기간	내 용
세계	4월22일(토)	80	청소년들과 가족	사업전 한달전부터	운동복, 도시락, 천막, 비옷
가든 파티	6월10일(토)	50			음식종류, 환면장갑 지참
캠프하이어	7월8일(토)	80			우천시 절내게임
스포츠축제	9월23일(토)	40			운동복(운동할 수 있 는 복장)
카울별관찰	10월28일(토)	25			방한구, 관자용구 지참
후지산사생회	11월25일(토)	100			그림물감, 파레트 등 그림그리기에 필요한 물 품, 도시락 지참
크리스마스행사	12월9일(토)	80			가위, 본드 지참
연탄들기 연피우기	1월27일(토)	30			도시락, 가위, 접착제 지참
겨울별자리관찰	2월24일(토)	25			방한구, 필기용구 지참
즐거움을 주는 공예품(소포지)	3월9일(토)	30			환면장갑, 손질레 지참 (여러가지 형접조각)

주최사업 이외 이용 안내

요금---	숙박료 무료	
	시설사용료 무료	
	식사	1일 1,600엔 (아침 400엔, 점심 550엔, 저녁 650엔)
	기타 시트세탁료 (1회 98엔)	
활동---	학습(회화부, 자연과학동)	
	스포츠(유도, 검도, 야구, 육상 등)	
	교양(좌선, 예법, 각종강의)	
	캠프(자연관찰, 야외취사등)	

사단법인 전국 청년의집 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청년의집협의회는 (일본) 전국의 국공사립 청년의집 (청년의집 유사시설 포함)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청소년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을 행하며, 각 청년의집의 관리운영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연혁

소화35년 6월 29일

국공사립 청년의집 31시설을 회원으로 임의단체 「전국청년의집협의회」가 조직됨

소화48년 3월 26일

문교대신(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전국청년의집협의회」로 현재에 이름

◆회원수

240시설(평성6년 4월1일현재)

<시설별>	국립	14	<유형별>	숙박형	203
	공립	223		비숙박형	38
	사립	3			

◆사업

- (1) 평성6년도 전국청년의집동시설대표자(소장등) 회의 개최
- (2) 제35회 전국청년의집운영연구협의회 개최
- (3) 「청년의집 실태와 과제」 제23집 간행
- (4) 「전국청년의집소식지」 제77·78·79호 간행
- (5) 평성6년도 청소년교육지도자 해외파견사업
- (6) 지역사업조성사업
- (7) 근속공로자 표창 ① 5년근속표창 ② 퇴직자표창
- (8) 평성6년도 전국청소년교육시설직원 정보망·집회(만남의 광장) 개최
- (9) 평성6년도학생청년 전국집회 협찬

◆예산

평성6년도 총예산액 18,640천엔

<수입>

회비	8,030천엔
기본재산이자	1,961천엔
보조금	5,251천엔
사업수입	2,850천엔
기타	548천엔

<지출>

관리비	5,820천엔
사업비	12,546천엔
기타	273천엔

◆임원: 회장1, 부회장3, 이사7, 감사2

<사무국> 사무국장1, 간사장1, 간사13, 사무국직원2, 전임직원1

사무국은 국립중앙청년의집 내에 있음

자연권 수련시설협의회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5년 근속자라든가 퇴직자를 표창하고 있어 자연권수련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오코 국립 소년의집 (MYOKO NATIONAL CHILDREN'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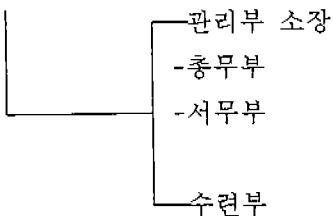
◆마스코트: 미미쿠와 미미찬

◆목적: 미오코 국립소년의집은 아이들이 풍부하고, 자연스런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돕는 시설이다.

◆역사: 1991년 4월 12일 기관 설립
1991년 12월 1일 개장

◆조직

소장 ----- 운영 위원회



◆활동

미오코 국립소년의집은 웅장한 미오코산 자락 해발 500-600미터에 위치해 있다. 주변 지역은 아이들의 연중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연중 강설량이 풍부하므로 미오코 국립소년의집은 특히 겨울에 매력적이다.

◆활동 사례들

봄, 여름, 가을

- 등산
- 하이킹
- 캠핑
- 오리엔티어링
- 천체관찰
- 야외취사

겨울

- 경사면 스키
- 크로스-컨트리 스키
- 눈썰매
- 눈신발 하이킹
- 눈동굴 만들기
- 눈속 캠핑
- 눈관련 놀이들

◆정보

- 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혹은 교사에게 사용 우선권이 주어 지지만 가족이나 성인들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숙박은 400명 야영 200명 수용능력
- 시설이용은 전화로 문의바람
- 숙박, 시설사용, 기구 사용 기타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됨
- 하루 식비는 국민학생 이하는 1,560엔, 중학교 이상은 1,600엔

◆사용자 통계(1993)

집단별 사용자수(단위 명)

	가 족	청소년단체	국민학교	중등학교	청소년집단	기타
정규사용자	8,755	6,351	7,720	6,409	2,974	4,503
전체사용자	10,448	10,503	13,490	10,983	5,527	8,163

집단형태에 따른 구분(단위 회수)

가 족	청소년단체	국민학교	중등학교	청소년집단	기 타
720(56.2%)	117(8.4%)	93(6.7%)	50(3.6%)	172(12.4%)	176(12.7%)

가족들의 사용 회수나 사용 인원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일본의 자연권 수련시설과 야외활동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공공단체에 의해 야외활동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와서는 더욱 그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의 놀이터를 잃고만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고마움과 신비로움에 접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사회교육단체나 사회사업단체에서도 야외활동사업을 활성화 해 왔다.

1993년말 현재 일본에서는 자연권시설만 하여도 13개소의 국립청년의 집과 14개소의 국립소년자연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시설을 제외한 공립시설만도 405개소(청년의 집 236개소, 소년자연의 집 169개소)에 이르고 있다.

山本學治 외(1994)는 “청소년 야외활동시설”란 저서에서 국립소년자연의 집의 현황과 활동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 저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일본 자연권 수련시설에서의 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그 저서의 내용에 나타난 일본 자연권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내용들이다.

야외활동이란,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접하면서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말한다. 즉 이들은 1차적으로 하이킹, 캠핑, 야외취사, 오리엔티어링, 싸이클링, 낚시, 수영, 요트, 스키 등과 같이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 자연관찰과 공예품 제작 등 여러가지 야외 에코

레이션활동이 추가되므로써, 야외에서 보다 폭넓고 유익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야외활동의 목적은 첫째로 자연속에서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며, 둘째는 자연과 접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관계를 이해하므로써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세번째는 야외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며, 네번째는 집단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야외활동시설의 입지조건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이다. 자연속에서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 부지와 그 주변 자연이야말로 활동이 장이 되는 시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의 입지조건으로서는 삼림이나 풍부한 동식물이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만약 그곳에 완만한 초원이 있거나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숲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환경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손이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연에 관해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 들어가 물놀이를 한다거나 초원을 이리저리 나다니며 즐거워하고, 숲속에서 아름다운 낙엽을 발견하고는 꿈에 젖기도 한다. 자연과 청소년의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자연의 모습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과의 공존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야외활동시설을 인공적인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환경인 자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山本學治 외(1994)의 말을 빌면 “야외활동시설이라 하면 흔히 도시시설처럼 건축적인 하나의 시설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야외활동시설이란 건축물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을 포함한 야외활동의 장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야외활동시설을 정의하기 전에 우선 야외활동이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의 마을이나 논밭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山本學治의 말을 빌면 “산촌의 자연 그 자체가 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 마을이나 숲, 논과 밭, 개울과 습지 같은 풍부한 자연환경은 마을사람들의 생활현

장이기도 하여 지도자 없이 청소년만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더우기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폐가나 신사, 석불같은 것도 많아서 농가에 민박하며 일손을 돕거나 하이킹 도중에 마을사람들에게 작물재배법을 배우는 등 자연속에서의 생활자세를 체험할 수 있다.” 야외활동에서는 최대한도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자유, 책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7일 금요일: 동경도 청소년 센터, 정부 간행물 센터, 일본청소년연구소(명치공원내 청년관 내)

오전 10시에 반전교 전철역 근처의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였다. 동경 시내에 있는 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 지역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연극실, 음악실, 자료실 등의 모든 방들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상담실은 연간 2,500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증의 심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문 치료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실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다. 자료실의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령해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 센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 건전 육성과 비행 예방이다. 작년 한해(‘94년) 동안 11만 3,887명이 센터를 이용하였다.

점심 시간 후에는 정부 기관들이 들어서 있는 곳을 관람하고, 정부 간행물을 판매하는 곳에 들러서 책들을 구입하였다. 책 속에서 사용하는 연도가 서기가 아니고 대부분 일본왕 즉위 후의 연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동차도 좌측 통행(영국식)이고, 교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는 것 하며, 일본은 자기 것에 대한 집념이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4시에 청소년 연구소에 들러 소장인 썬고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 청소년 연구소는 주로 일본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연구하

고 있다고 하였다. 올해에 연구한 것이 일본 청소년들의 금전에 관한 가치관을 연구하였고, 곧 나올 보고서는 일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한 것이라고 한다. 선생은 자신이 저술한 책인 ‘마찰 회피의 시대’라는 책을 방문한 우리에게 한권 씩 저자 사인하여 나누어 주었다.

현재 일본의 신세대의 경향은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 성향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본 청소년의 성향은 우리가 방문한 모든 기관의 직원들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기들과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자신들이 즐기는 활동을 하는 것을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거나,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회귀해진다거나,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의 일에는 전혀 상관을 안한다든가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일본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을 즐긴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마찰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져서, 요즘은 섹스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구 당 자녀 수도 1.5명으로 인구감소가 큰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일본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일본 청소년 연구소 소장의 말로는 일본 사람은 겉마음과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공부라고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자신을 즐기는 것, 인기가 있는 것 등을 진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녁에 고바야시 계장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번에는 중앙 청소년의 집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과장, 그리고 고바야시 계장의 선물 그렇게 세개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과장과 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비로소 고마와 하면서 자기의 선물을 받았다.

동경도 청소년 센터(1984년도 개설)

◆설립배경:

- ① 학대, 교내 폭력, 등교 거부 등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 ②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립
- ③ 청소년 건전육성, 비행 방지, 유해시설 방지
- ④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청소년 센터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사회활동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주꾸구 Central Plaza에 설립.

- 규모:677평방미터, 이용료:무료
- 상근 직원: 동경 도청 직원(2명), 비상근 전문위원(15명):정년퇴직한 전문직 사람이 월 15일 근무(월급:18만 3천엔)

◆시설물:

① 로비:지방신문 12종류 비치. 시설 이용,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전문지도원 배치. 게시판에 전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이벤트 사업 게시. 메모판 설치.

② 도서자료실:서적 12,000권 소장.전국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모아둠. 자료는 3주간 반출할 수 있음.

③ 공연 준비실: 방문시 중학생들이 연극 연습하고 있었음.

④ 음악실: 드럼, 오르간, 피아노 등을 구비하고 있었음. 방문시 고등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었음.

⑤ 실험 실습실

⑥ 상담실: 병원에 가기 전단계의 청소년들을 상담. 동경 도립 병원의 의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

⑦ 이밖에 컴퓨터실, 인쇄기 등을 갖추고 있음.

동경도 이외에 일본 전역에 47개도 시별로 각 1개소 이상의 청소년 센터가 있으며, 군단위에도 청소년 시설이 있다. 일본에서는 평균 2개의洞에 한개 정도의 청소년 센터가 있다고 한다.

21세기는 경제 전쟁에서 문화전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점에서 보면 일본은 아주 강한 나라인 것 같다. 외국의 문화나 유행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내적인 것은 거의 바꾸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받아들인 문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에 특히 많이 나타나 있다. 외국 단어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외국말이 아니라 자기나라 말이 되어 버리는, 본래의 외국어와는 전혀 다른 발음의 일본어가 되어 버린다. 일본 사람이 외국어 발음을 잘 못한다는 것도 이러한 외래어의 일본어화의 한 이유인 것 같다.

일본 사람의 의사결정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여러 사람이 점심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아무에게도 잘못된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결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즉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그까짓 점심 먹는 것 아무렇게나 결정이 되면 어쩌냐. 내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결정하든지 빨리 결정해서 빨리 먹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기 보다는 문화의 차이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본 사람들 틈에 한국 사람이 끼면, 성질 급하게 의사 결정을 주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난폭자라는 말을 듣기 쉽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조직 내의 규칙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지만, 물건을 만들고, 정리하고,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 더 편리한 방식을 찾고 개선하

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사소한 면에 까지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 생활의 곳곳에 엿 보였다. 예를들면 꽃을 심는 것, 변기 모양, 세수대 모양, 물건 정렬 등 눈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갈하고 효율적으로 정돈되어 있으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4/8 토요일: 한국으로 출발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벚꽃이 만발하였다. 중앙 청소년의 집의 과장을 우연히 만나 일행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8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기념 사진들을 찍고, 10시 30분에 상꾸바시 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토요일은 센타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올림픽 센타의 직원들은 없었다.

상꾸바시 역에서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이야기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그 수효를 세어보니, 서로 7-8번의 인사를 한다. 일본은 옆에서 구경하기에는 참 흥미있는 나라이지만, 그 속에서 살기에는 힘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작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문화이다.

신주꾸 역에 10시 50분에 도착하여,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12시 20분 리무진 버스를 예약하였다. 그리고 한시간 동안 아직 준비 못한 선물이라든가, 쇼핑을 하고, 12시 정각에 모이기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다. 리무진은 정각 12시 20분에 출발하였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우선 짐을 부치고, 점심 식사를 하였다.

4시에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여 7시에 김포 공항에 도착하였다.

부록3: 신문기사

입시라는 현실적 이유로 중3과 고3을 수련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입시후부터 상급학교 진학시까지의 기나긴 공백기간이 청소년 비행의 발생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활동은 그 기간의 여러 대책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능 끝낸 수험생들을 위해 교양 프로그램 마련을(1996년 11월 26일 주요 일간지 독자 투고란):

대학 1학년이다. 지난해 이맘때 수능능력시험을 본 뒤의 생활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입시준비로 인한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 갑자기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귀중한 시간을 아깝게 흘려보냈다.

학교에서는 방학전까지 출석할 것만 요구할 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다. 방학중에도 알찬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험끝낸 수험생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지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후배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단체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매스컴을 통해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

1996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 一事一言 란 김태기(단국대 교수, 경제학)의 '문화산업'

가로수에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저기서 음악회나 전시회 행사가 부쩍 늘고 있다. 낙엽을 밟으며 쾌적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은 책을 읽을 때, 아름다운 미술작품이나 영화를 감상할때, 명승부를 연출하는 경기를 볼 때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느낀다. 이처럼 문화는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된다.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런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문화산업」도 번창하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감독의 영화 「쥬라기 공원」으로 번 돈이 자동차 1백50만대를 판 것과 같은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문화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는 문화도 국가경쟁력의 일부분이 돼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문화사업이 성장할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도시의 빈터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나마도 도심에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의 교사나 운동장은 썰렁한채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문화산업」도 산업인만큼 투자가 필요하다. 문화시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속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문을 열어 음악과 그림을 배우도록 하고, 산과 강을 개발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자. 정부 차원에서 문화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에서도 노사가 손잡고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자. 어찌보면 국가경쟁력이니, 경제위기니 하는 어려운 얘기보다 그게 더 확실하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문화력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

게 문화적인 감수성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은 경제력이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일석이삼조의 효과가 있다. 중앙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줄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감수성의 증진을 통해 삶의 경쟁력을 획득하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낙후성을 겪게 될 것이다.

국민문화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문화예술부분의 예산은 96년 정부 총예산의 0.56%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정부가 문화예산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 양여금의 일정부분을 지역의 문화 관련 예산으로 활용한다든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문화예산만큼을 지방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매칭펀드제도는 시도해 볼 만하다. 또 문화복지복권의 발행도 검토해 볼 만하다.

1. 특히 생활권 수련시설들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지역주민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남 청소년회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청소년회관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2.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농구장과 같은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홍보가 없이도 아이들은 저절로 모인다고 한다. 그러면 상담과 같은 다른 사업을 하기도 수월하고 시설 홍보를 하기도 쉽다고 한다.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있으면 거의 예산자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체육 쪽이었다. 그리고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체육은 큰 효과가 있다.

시설 단체들의 여름 프로그램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활동할 시간이 생기는 방학 중에, 특히 여름 방학 중에 많이 실시된다.

서울시 각 구민체육센터나 YMCA 등 사회체육시설마다 방학기간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마련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마련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붐이 일고 있는 농구를 비롯해 태권도 검도 배드민턴 등 생활스포츠 종목들. 계절에 맞춰 수상스키 윈드서핑 래프팅 같은 수상스포츠들도 준비돼 있다.

이중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종목은 농구. 높은 인기에 편승해 농구교실 농구교실을 앞다퉈 개설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한달 단위로 개설하는 고정프로그램인 정기농구교실과 함께 방학기간중 농구특강교실을 마련하고 있다. 기간은 7월20일께부터 8월20일 사이가 대부분이고, 월·수·금반 혹은 화·목·토반으로 나뉘 1주일에 3일 강의한다. 하루 1시간30분~2시간씩 드리블 슛 패스 등 농구의 기본기술을 가르치고 기초체력을 다진다.

이밖에 배드민턴, 태권도, 검도, 수영, 헬스 등의 강좌도 방학기간중 특별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다.

◇96년도 방학중 체육프로그램개설 시설 (서울지역)

기 관 명	위 치	연 락 처
한국체육진흥회	동작구 대방동	849-8401
한국사회체육센터	강동구 둔촌동	482-1105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 해화동	745-6701
서울YMCA	종로2가	735-4612
강남YMCA	논현동	549-5878
송파YMCA	잠실동	424-7512
서대문구민체육센터	홍은동	395-8231
서초구민체육센터	반포동	591-6060
강남구민체육센터	포이동	3461-3877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정동	652-1792
성동구민체육센터	성수동	499-1800
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동	619-6640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장안동	246-1281
성북구민체육센터	원곡동	909-3497

◇ 유스호스텔(중앙일보 1996년 11월 화요일 기사)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배낭여행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낭여행객들 대부분이 유스호스텔을 그저 값싼 숙박지로만 잘못 인식하고 있어 올바른 이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스호스텔은 본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주 목적이었다. 따라서 숙박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각종 레저스포츠를 통해 세계 여행객들과 우호를 맺고 이해를 도모하는 국제교류의 장이다.

외국의 유스호스텔

유럽이나 호주의 유스호스텔은 대부분 각종 레저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적극 이용하면 레저 스포츠도 즐기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사귄다. 아주 관광의 정유씨는 「우리나라 배낭여행객들은 대부분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스호스텔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 겨우 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스호스텔 운동이 처음 시작된 독일의 경우 거의 대다수의 유스호스텔들이 레저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뉘른베르크 유스호스텔의 경우 테니스장, 수영장,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등 스포츠시설뿐 아니라 캠프파이어, 바베큐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호수를 끼고 있는 베를린의 반지 유스호스텔은 카누와 카약을 빌려주고 있다. 이들 배는 대부분 무료로 빌릴 수 있거나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이나 들을 끼고 있는 유스호스텔에서는 대부분 산악자전거(MTB)를 빌려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주변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에서는 윈드서핑, 스노클링, 바다카약 등 장비를 빌려주기 때문에 수상스포츠를 맘껏 즐길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유스호스텔에서는 대부분 장비조작법, 운동요령 등을 가르쳐 주기 때문

에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의 하태춘씨는 「세계 94개국 6백만명의 유스호스텔 회원들이 전세계 6천여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유스호스텔 운동은 이들 시설을 적극 이용하면서 서로 일체감을 갖자는 것인 만큼 그저 잠만 자는 곳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며 교류의 장으로 적극 뛰어드는 것이 올바른 이용태도」라고 밝혔다.

이용방법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면 우선 국제연맹에서 발행하는 회원권 소지가 필수다. 국내에서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02)725-3031, 부산경남연맹(053)462-9930, 전북연맹 (0652)87-3020에서 발행하고 있다.

반명암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회원신청서를 기록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1년회비는 24세 미만의 경우 1만 2천원, 25세 이상은 2만원, 가족회원의 경우 3만5천원. 20명 이상의 단체는 30% 할인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핸드북

국제유스호스텔연맹에서 발간한 가이드 북으로 전세계 유스호스텔 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회원들에게 부여하는 할인혜택 등이 수록돼 있다. 세계 공용의 독특한 표지로 위치, 전화번호, 침실수, 자가취사여부, 가격안내 등이 기록돼 있다.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체들이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캠프들

단체들은 방학 특히 여름방학을 기하여 많은 ○박 ○일의 행사성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

독자투고(국민일보, 96. 7. 4. 목 장삼동, 부산 신평동)

전국의 초·중·고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20일을 전후해 각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여름캠프가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여름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심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자연에 대

한 이해심과 극기심을 길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교육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런 좋은 행사가 너무 비싼 참가비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3박4일이나 4박5일의 일정에 6만원에서 14만원 선이며 어떤 고급캠프는 20만원선을 웃돌기도 한다. 따라서 자칫 청소년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동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을 하면서 자연을 벗하며 단체생활을 익히는 캠프비가 저렴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내용도 도시학생과 부유층 자녀 위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각종 사회단체와 관광사측에서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프랑스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보름이나 한달간의 야외활동(바캉스)이 제공되며, 그래도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전국적인 모금활동이 벌어진다고 한다.

다음은 신문에 나온 단체에서 실시하는 여름방학 캠프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캠 프 일 랑 표

행사명 (주제)	주 최	연락처	행사내용	일 시	장 소	대 상	참가비	비고
자연과 환경 캠프	한국청소년 그린캠프 봉사단	216-2414 ~5		7.22~7.31	설악캠 버리 수련장		32만원	
어린이 환경 캠프	한국소년담협대	297-5577		7.25~7.28	태백 정선		7만원	
96가족 캠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706-4141 ~3		7.29~8. 3 (2회)	경기 가평군		무료	
말들을 위한 캠프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		7.21~7.23		중1,2(여)	4만5천원	
장애인 형제 캠프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	521-5364		8. 1~8. 3		12세이하 장애아	2만5천원	
어린이 김치 담그기 강좌	풀무원 김치박물관		김치담그기 및 전동음식 만들기					
하계수 련대회	청소년 사업관	795-8000	심성, 담력, 극기훈련, 레크리에이션	8. 1~8. 3	산정호수 유스타운	중·고생	무료	
화랑경 신제승 국토 순례	한국체육 진흥회	849-8401		7.24~7.30	제주도	초·중생	22만원	
4문화 캠프	보라매 청소년회관	834-7232	음악,미술, 무용,마임, 영상,자연의 분반활동	8. 5~8. 8	강원도 정선 청소년 수련원	중·고생	4만원	

114 수련시설 필요수량 확보 및 지역별 균형모델

행사명 (주최)	주최	연락처	행사내용	일시	장소	대상	참가비	비고
문학캠프	우리문학사	647-7910 273-2388	문학캠프 정선아우라지 탐방	7.29~8. 1	평창군 우리집농장		10만원	
	문학의해 조직위원회	766-2895 ~6	문학과 독자 와의 문학캠프	7.27~7.29	평창군 둔내 유스호스텔		3만원	
천재관측캠프	어린이회관	204~6060	별자리관찰	8. 4~8. 6	어린이회관 천재과학실	초등2~6	6만5천원	
	친문우주학회	587-4478 ~9	꽃과별과의 만남	7.18/20/26 8. 5 8. 9 (2박3일)	충주온촌리 사조마을	초등생 중고등생 성인	8만원 8만5천원 9만원	
과학캠프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042) 866-6494		8. 6~8.14 (3회)	대전엑스포		10만원	
에디슨호킹 과학캠프	한국우주 정보소년단	3471-5918	UFO제작, 모형 로켓, 아이스크 림, 사이다 만 들기 등	8. 1~8. 3	속리산 보람원	초등4~중2	10만원	
여름영화캠프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267-4971	야외영화 시사회	8.12~8.14	동해안삼포 해수욕장		8만원	
청소년백범 민족캠프	청소년백범교 사모임	719-1311	전통무예 및 예절 연습 등	8. 1~8. 3	속리산 보람원	초등4~중2	8만원	
청학동 예절캠프	MBC 교양제작국	368-1616	전통예절, 한문 교육, 새끼꼬 기, 도토리묵 만들기 등	8. 3~8.11	청학동 도인촌마을	초등 4, 5	무료	
우리정지키기 여름장날이 캠프	두레민족생활 문화원	261-0513	훈집짓기, 태권, 천연염색, 우리 놀이배우기 등	8. 1~8. 3	순천낙안 읍성 민속마을		9만5천원	
청소년 우리음식 만들기	YWCA 강남청소년 회관	544-9725	김치, 만두, 산 적만들기 및 김치박판 견 학		YWCA 강남청소년 회관	초4~중	2만원	
어린이여름 미술학교	예술의 전당	580-1619	장대, 동물 분 장, 도기채색, 아크릴관화등	7.22~7.27 (9:30~12: 30)	예술의전당	초3~6	8만원	
청평호 탐험캠프	절스카웃 서울연맹	734-8353		8.19~8.21 8.21~8.23	청평호 나이야기라 연수원		5만9천원	

부록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996. 3.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I.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기본법 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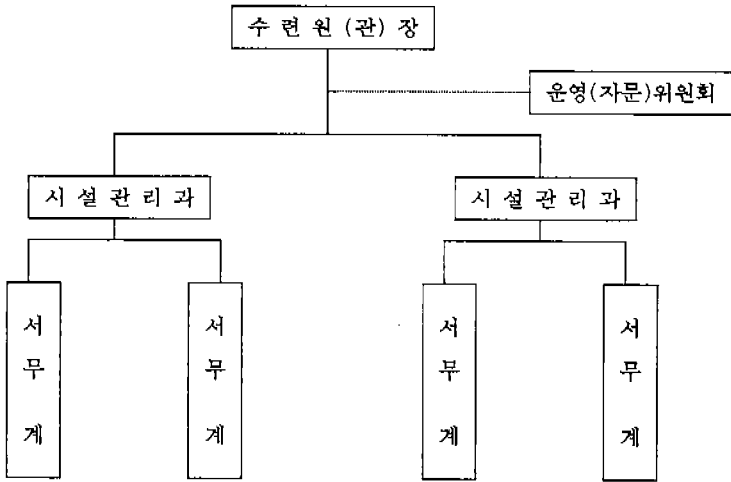
- 허가권자 : 시·도지사
- 시설운영 : 시·도지사에게 등록
- 허가요건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수련시설운영책임자 : 1급 청소년지도사(예정) 자격을 갖춘 자
-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생활권 수련시설(주로 일상생활권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시설)
 - 청소년수련원 : 실내 및 실외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
 - 청소년수련관 : 실내활동위주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수련실 :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주로 자연속에서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수련마을 : 숙박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의 집 : 생활관등의 시설을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수련거리의 야영편의 제공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숙식 편의와 여행청소년 수련활동지원(1종~4종으로 구분)
-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수련
시설의 수용정원별 규모에 따라 배치

II. 수련시설 설치 ·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설치계획
 - 설치장소
 - 토지이용계획
 -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삭 제>
 -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 · 면적 · 소유주 · 용도지역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시설별 · 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 자금조달계획서
 - 공사추진일정표
 -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등(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 운영계획
 -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 청소년지도자 배치계획
 - 시설물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규칙
 -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Ⅲ.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조직과 업무의 예



○ 업무분장 내용

구 분		내 용
수련원(관)장		수련원의 모든 사무 및 인원의 관리·운영
시 설 관 리 과	서 무 계	- 예산 및 물품관리, 수련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사, 급여, 후생등에 관한 일반행정 - 자원봉사인원관리,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 구매 및 기타 타과(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시설관리계	-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료 징수(매표 및 주차장관리 등) - 경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시설 기자재 대여 및 반입에 관한 업무
수련과	수련계	- 수련활동의 기획·운영 및 지도 - 관내 수련활동 현황 파악 및 기록의 유지·관리 - 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운영실적의 분석·평가 -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자연수
	상담계	- 청소년의 상담에 관한 제반사항 -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

○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확보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IV. 수련거리 운영

■ 수련거리 운영의 기본방향

○ 수련거리는 설치목적과 청소년기본법령과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 수련거리는 청소년의 이용이 용이한 시간대에 운영한다.

- 평일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 등

○ 시설종류별로 시설에 적합한 기본형과 이를 응용한 수련거리를 다양하게 운영하되 대표적인 수련거리, 전통있는 이벤트등을 기획·운영한다.

- 청소년의 욕구와 흥미에 부합되는 수련거리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련거리

- 청소년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수련거리 등

○ 수련거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련거리 참여자가 부담하되,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한다.

○ 수련거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진자료, 비디오, 슬라이드, 지도자 매뉴얼, 청소년용 교재, 악기등 교구를 포함한 자원을 모아 자료집을 제작·보급한다.

○ 수련거리의 실시

- 청소년지도자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하도록 한다.(강제 참여 금지)

- 필요한 비품, 교구, 기자재 등은 미리 확보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수련거리는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 시설 종류별 운영할 수련거리

-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운영할 수련거리
 - 청소년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련거리
 - 생활의 슬기를 배울 수 있는 수련거리
 - 청소년 자아발견, 정서함양 등을 할 수 있는 수련거리
- * 생활권 수련시설에서 도서실 위주의 운영은 가급적 탈피하도록 한다.
-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운영할 수련거리
 -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수련거리
 - 자연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련거리
 - 동료와의 협동심, 이해심, 극기심등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거리
- *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극기훈련 일변도의 수련거리 운영은 탈피하도록 한다.
- 유스호스텔에서 운영할 수련거리
- 여행을 하면서 동료에 대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수련거리

■ 수련거리 적용의 예

- 실내수련활동
 - 전통다도
 - 국악강습
 - 명상수련
 - 독서토론회
 - 촛불의식
 - 심성훈련 등
- 야외수련활동
 - 오리엔티어링
 - 풀럼부스 하이킹

- 향토문화 찾기
- 자연관찰(식물관찰)
- 모닥불 집회
- 실내외 공통 수련활동
 - 자가 취사
 - 미니올림픽
 - 촌극놀이

